

제42회 정기포럼

-행정자치부민간협력지원사업-

---

## 자원봉사진흥법 제정에 관한 100인 전문가 초청포럼

---

- 일시 : 2004년 10월 15일 (금) 14:00 - 16일(토) 14:00
- 장소 : 강원도 한계령 오색그린야드호텔
- 주최 : 중앙일보 · 한국자원봉사협의회
- 주관 : 한국자원봉사포럼
- 후원 : 삼성사회봉사단

## 한국자원봉사포럼

한국자원봉사포럼(Korea Volunteers Forum)은 자원봉사 운동의 활성화전략과 사회적 이슈들을 자원봉사학자 및 중견관리자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토론하고 올바른 방향을 잡기 위해 학회 형식으로 설립되었습니다.

### □ 임원구성

·회장 : 이제훈 (삼성사회협력위원회 상임고문)

·총무 : 이성록 (국립한국재활복지대학 교수)

·고문 :

최일섭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대 회장)

이윤구 (대한적십자 총재, 한국자원봉사포럼 2대 회장)

조해녕 (대구광역시 시장, 한국자원봉사포럼 3대 회장)

금창태 (시사저널 사장, 한국자원봉사포럼 4대 회장)

·운영위원

고진광 (인간성회복추진협의회 사무총장)

구혜영 (광진구자원봉사센터 소장)

김길수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사무총장)

김성경 (한국성서대학교 교수)

김성이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영호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정배 (한국청소년개발원 전문위원)

김통원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현옥 (강남구자원봉사센터 소장)

민경춘 (삼성사회봉사단 상무)

박영숙 (호주대사관 문화공보실장)

박재진 (<주>미러텍 사장)

박현경 (강원도청보건복지 여성국장)

설계현 (경상남도자원봉사협의회 회장)

이강현 (볼런티어21 사무총장)

이상진 (학교자원봉사연구회 회장)

이성철 (남서울대학교 교수)

이창호 (중앙일보 전문위원)

정갑진 (새마을중앙회연수원 부원장)

최성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 □ 사무국

우) 100-151 서울시 중구 충정로1가 58-1 청양빌딩 9층

Tel : 02-737-1082

Fax : 02-737-1083

E-mail : kovof@hanmail.net

H-page: www.volunteerforum.org

간사 : 오시영

## 차 례

포럼일정 ..... 1

시민자원봉사헌장 ..... 2

### 전체발제

자원봉사활동진흥법안 통과와 쟁점과 과제  
..... 3

**이창호 (중앙일보 전문위원)**

### 분과토론

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운영모형  
..... 21

**구자행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사무처장)**

자원봉사센터 정체성과 혁신방안  
..... 35

**이성록 (국립한국재활복지대학 교수)**

초·중·고 대학의 자원봉사  
..... 47

**이성철 (남서울대학교 교수)**

부록  
자원봉사진흥법안 ..... 57

한국자원봉사학회 정관 ..... 61

포럼(회원)입회 신청서

# 포럼 일정

14:00~14:30	<b>첫 째 날 (15일)</b>
14:30~14:40	<b>등록 및 접수</b>
	<b>개회식</b>
14:40~15:10	· 개회사 : 이제훈(한국자원봉사포럼 회장)
	<b>전체주제 발표</b>
	· 주 제 : “자원봉사진흥법 쟁점과 전망”
	· 이창호(중앙일보 전문위원)
15:10~15:30	<b>휴식 및 장소 이동</b>
	<b>분과토론</b>
15:30~18:00	· 한국자원봉사협회의 조직운영 모형
	- 구자행(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사무처장)
	· 지역자원봉사센터의 혁신방안 및 분야별 센터간 역할조정
	- 이성록(국립한국재활복지대학 교수)
	· 초·중·고 대학교육 및 학습과정에서의 자원봉사삽입 방법
	- 이성철(남서울대학 교수)
	<b>둘 째 날 (16일)</b>
	<b>종합발표 및 토론</b>
09:00~12:00	· 사회 : 최일섭(호서대학 교수)
12:00	<b>폐회</b>

# 시민자원봉사헌장

## 서 문

새 천년을 앞두고 인류는 세계평화와 번영, 풍요로운 삶을 더욱 갈구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계층간의 이기주의와 가족기능의 약화 등 급변하는 사회환경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파생시켜 진정한 민주시민 공동체 사회의 실현을 가로막고 있다. 현대의 공적 사회제도는 개인의 존엄성을 충족시켜줄 만큼 완벽하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스스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진정한 민주사회 발전을 위해 나서지 않을 수 없다. 자원봉사는 우리 시민들이 새로운 천년을 향해 나아갈 기본 방향이다. 인간에 대한 순수한 인도주의의 발로이며 건강한 사회를 이끄는 등불이다. 그래서 시민의 일원으로 참여해야 하는 당위성을 가진다고 믿는다. 자원봉사란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대가없이 지역사회의 요구와 문제해결을 위해 제공하는 모든 공익적 활동을 의미한다.

## 기 본 정 신

- 우리시민은 자원봉사가 민주시민공동체 형성과 성숙을 위한 필수적 활동임을 믿는다.
- 우리시민은 자원봉사가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임을 인식하고 실천으로 옮긴다.
- 우리 시민은 자원봉사 활동을 통하여 자아성장을 꾀하고 잠재력을 개발한다.
- 우리시민은 자원봉사가 개인의 성장과 사회발전,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온다고 믿는다.
- 우리시민은 사회문제 해결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상호보완적 동반 관계에 있는 정부와 서로 협력한다.

## 행 동 강 령

- 우리시민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자원봉사 대상자의 자율적 결정을 존중하면서 자원봉사 활동을 한다.
- 우리시민은 자원봉사 대상자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사회적 모든 특성에 편견을 가지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다.
- 우리시민은 자원봉사에 필요한 교육과 지도를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자원봉사 기관은 이에 대해 필요한 교육과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 우리시민은 개인적 특성과 능력 그리고 희망에 상응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다.
- 우리시민은 성실하고 진지하게 자원봉사 활동을 하며 자원봉사 대상자 및 업무와 관련된 비밀을 지킨다.
- 우리시민은 성공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위해서 봉사기관내의 다른 구성원과 협력하며 필요시 지역 및 국제적 연대를 통해 봉사활동의 목적을 달성한다.



전체 발제

# 자원봉사활동진흥법안 통과의 쟁점과 과제

이 창 호 <중앙일보 전문위원>

# 자원봉사진흥법안 통과의 쟁점과 과제

이 창 호

중앙일보 전문위원

자원봉사활성화추진기획단 총간사장

## 1. 들어가며

이 글은 최근 한창 법안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자원봉사활동진흥법안의 구체적인 내용, 쟁점, 성격, 특징 등을 설명하면서 동 법안의 통과 전망과 이후의 향후 과제들을 정리해 본 것이다.<sup>1)</sup>

자원봉사활동진흥법 (이하 자원봉사법)의 입법은 주지하듯 지난 10년 동안 한국 자원봉사계의 숙원사업이었다. 그동안 숱한 논의와 많은 법안들이 등장했지만 아직도 입법이 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17대 국회가 구성되고 법안 통과 가능성이 다시 점쳐지면서 행정자치부를 중심으로 자원봉사활성화추진기획단 (이하 기획단)이 만들어 지고 6개 부처와 민간 전문가 등 총 22명의 2개월에 걸친 토론 끝에 최종 합의안이 만들어 지게 되었다.

동 법안은 지난 7월 12일 공청회를 거쳤다. 행자부는 부처심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일부 예산지원 조항에 반대의견을 내면서 큰 난관을 맞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행자부는 일단 그들 부처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국무회의를 통과시키고 국회 심의 중 다시 기획단안으로 복원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듯 하나 여러 가지 점에서 향후 논란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이 글은 일단 기획단 안을 중심으로 법안의 여러 쟁점들을 살펴본 뒤 현재의 상황에서 한국 자원봉사계가 취할 일이 무엇인가 등 향후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이번 법안의 주요 쟁점

이번 법안은 제1조 목적에서부터 기획단에서 숱한 토론과정을 거쳤다. 법안 명칭에서부터 거의 전 조항이 합의의 대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글에선 가능한 한 문제가 됐던 각 조항들을 짧게나마 모두 다뤄 보고자 한다.

---

1) 이 글은 지난 7월 16-17일 양일 간 강원도 홍천 대명콘도에서 한국자원봉스포럼 주최로 열렸던 제41회 정기포럼에서 발표한 필자의 글은 최근의 상황에 맞게 수정한 것이다.

## 1) 명칭

기본법, 지원법, 진흥법 중 명칭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대한 논의 끝에 일단 ‘진흥법’이라고 했다. 그러나 자원봉사기본법의 성격을 가지는 진흥법이 되도록, 내용에선 기본법적인 사항을 많이 규정했다.

## 2) 목적과 기본방향 (1조, 2조)

이 목적과 기본방향에선 특히 자원봉사의 기본법적인 측면을 강조, 자원봉사 활동의 개념, 정의 등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정리했다. 이에 따라 자원봉사 활동이 ‘국민의 기본적 권리’이며 그 활동의 기본원칙은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이며, 활동이 ‘비영리적, 비정파적, 비종교적’이 되도록 해야 함을 담았다. 이는 특히 향후 이 법이 한국 자원봉사 활동의 교과서로 작용할 것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 3) 용어의 정의 (3조)

(자원봉사단체)

이 조항에서 많은 논쟁이 있었다. 특히 3항의 ‘자원봉사단체’를 어떻게 규정하느냐를 두고 많은 논쟁을 벌였다. 자원봉사단체를 “비영리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비영리단체’로 하자는 강력한 주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는 ‘대통령령의 규정’ 문구를 뺀 경우 모든 기관 단체를 다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이하의 조항들에서 이 법에 의한 관리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원봉사 포상, 자원봉사자 보호, 관리, 조세감면 등등의 조항에서 모든 기관 단체들을 다 인정해 줄 순 없다는 얘기였다.

그러나 기획단 전체 회의에서 결국 진입장벽을 없애고 모든 기관 단체들을 다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쪽으로 결론이 나 ‘대통령령의 규정’ 문구를 뺐다. 대신 포상, 보호, 관리 등등의 조항에서 당초의 ‘자원봉사 단체’ 라는 문구를 빼고 대신 ‘자원봉사 활동’이라고 용어를 수정했다. 즉 단체에 대한 포상, 보호 등이 아니라 활동에 대한 포상, 보호 등을 하겠다는 뜻이다.

(자원봉사센터)

법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어떻게 규정하느냐는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상하리 만치 이에 대해선 큰 논쟁이 없었다. 모두들 쉽게 “자원봉사센터는 (모든) 법령과 조례에 의해 설립된 조직--”이라는 센터의 정의에 동의했다. 이는 센터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진 각 정부부처가 작심(?)하고 법안에 임하고 있음을 감지(?)한 행자부 및 법안위원들이 쉽게 센터의 모든 문을 열어 주었기 때문으로 보였다. (사실, 각 부처의 센터들은 관계 법령에 의해 설립 되었으므로 이 법에서 제한을 하면 법끼리 충돌하는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이에 따라 자원봉사센터는 행자부 지원의 센터들과 함께 여성부, 문광부, 청소년부 등 모든 부처의 산하 센터들이 완전히 자유 경쟁하는 시대로 접어들게 됐다.

한편, 법안위는 일부 법안위원의 주장에 따라 자원봉사센터를 3조 3항의 ‘자원봉사단체’중 하나로 규정했다가 결국 센터협회 측의 주장에 따라 그 같은 문구를 삭제했다. 센터협회측은 센터의 활동을 개발, 장려, 연계, 조정을 하는 것으로 주장했으나 ‘조정’이란 단어가 문제가 있다는 다수의 지적에 따라 결국 ‘협력’으로 바꾸는데 동의했다.

#### 4) 국가 등의 책무 (4조)

이 조항에서 제 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한 선언적 규정은 별 문제없이 통과 됐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2항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에 관한 정보제공 등 국민의 자원봉사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는 문구였다. 행자부가 삽입하고 싶어 하는 이 ‘정보제공’ 문구에 대해 특히 문광부, 보건복지부가 강력한 반발을 했다.

각 부처의 전산망이 잘 가동되고 있는데 왜 행자부가 통합전산망을 만들려고 하느냐는 항의였다. 행자부는 그 같은 통합 의도가 아니라고 항변을 했지만 결국 양보하는 선에서 매듭을 지었다.

#### 5) 자원봉사진흥위원회 (6조)

국무총리 산하에 진흥위원회와 그 실무위원회를 두는 안에 대해선 대체로 쉽게 합의가 됐다. 그러나 시, 도 등 지자체에 역시 진흥위원회를 두는 안은 기획단 전체회의에서 삭제됐다. 굳이 법에 명시를 하지 않아도 중앙에 진흥위를 둘 경우 지자체가 자연히 따라 올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은 것이다.

이 조항에서 특기할 점은 부처별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평가’란 단어를 삭제한 점이다. 당초 법안위 안에는 이 단어가 있었으나 기획단 전체 회의에서 자칫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 해 삭제를 했다.

#### 6) 학교, 직장 등의 자원봉사 장려 (7조)

이 조항 역시 많은 논란 끝에 3항에 “학교, 직장 등의 장은--”하며 들자를 추가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즉, 자원봉사 활동의 공헌 인정을 왜 학교, 직장의 구성원들에게만 국한하느냐는 주장을 “이 조항은 선언적 조항이고 무엇보다 학교, 직장이 중요하니 그를 강조하고 나머지는 등--정도로 하자”며 설득했기 때문이다.

#### 7) 자원봉사자 보호 (10조)

이 조항 역시 술한 논란 끝에 1항에 보호의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당초의 안은 비록 선언적이지만 정부 외에 민간 자원봉사 단체, 센터들도 보호의 의무를 지는 것으로 했었다. 향후 중앙 및 지방정부가 구체적으로 보험 등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많은 연구가 필요한 과제임으로 일단 대통령령에 위임을 했다.



## 8) 자원봉사 활동의 관리 (11조)

당초 법안위의 안은 ‘자원봉사 관리자’를 두는 것이었다. 그러나 논란 끝에 관리자 대신 그냥 “관리되도록 노력해야한다”며 선언적 조항을 두는 것으로 했다. 자원봉사관리자를 법에 두기에는 아직 여건이 충분치 않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었다.

## 9) 한국자원봉사협의회 (14조)

이 협의회 조항이야말로 가장 논쟁이 심했던 조항이었다. 전체 기획단원 중 특히 새마을은 끝까지 이 협의회를 빼야 한다고 주장을 계속했다. 새마을 측의 주장은 협의회는 필요하되 법정단체가 아닌 단순 민간기구로 남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새마을 측의 주장을 제외하고 협의회와 관련, 문제가 된 것은 협의회 사업내용들이었다. 협의회 사업을 어디까지로 규정할 것인가를 두고 ▷협의회 조항에 그냥 모든 사업을 늘어놓는 안, ▷협의회 산하에 진흥원을 두고 정책개발, 교육 훈련, 조사연구 등은 별도로 빼는 안, ▷아예 협의회와 진흥원을 별개 단체로 나누고 사업도 확실하게 나누는 안 등 몇 가지 안이 검토되었다.

결국 논란 끝에 협의회 조항에 사업을 늘어놓는 첫 번째 안을 택하되, 협의회 사업이 너무 많으니 교육 훈련, 정책 개발 등 몇 가지 사업은 제하자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 그들 교육 훈련 등의 사업은 협의회로 통일하기보다 각 분야별 기관 단체들이 알아서 실시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한편, 각 정부부처 관계자들은 한국자원봉사협의회를 법정단체화 하면서 협의회를 단순히 행자부의 산하단체로 만들거나, 기존의 협의회를 그냥 인정해 주는 것은 방법과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의견들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협의회 설립과 운영에 대해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 현재의 조직을 전면 개편케 했다. 그와 함께 협의회 운영 및 사업에 대해 국가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 10)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15조)

공청회 후 마지막 기획단 모임에서 자원봉사단체들의 ‘사업비’에 한해 국가 및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항은 지난 10년간 등장했던 기존 법안들에선 없었던 것으로 이번에 처음 삽입된 것이다. 사실 단체지원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별도로 있어 그것으로 충분치 않느냐고 주장돼 왔으나 공청회 후 이번에 아예 삽입시키자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

## 11) 자원봉사센터의 설립, 운영 등 (16조)

자원봉사센터의 설립주체를 국가로까지 확대했다. 이는 타 법령 (예, 청소년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이 그같이 국가 및 지자체를 설립 주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센터를

법인이 운영한다”는 기존의 문구도 “법인이 운영하거나 타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케 한다”로 보다 자세히 바꿨다.

한편 15조 4항에선 자원봉사센터의 사업 및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행자부 센터에만 국한하도록 했다. 즉, 다른 법령에 의해 이미 설립된 센터는 이 법에서 제외키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 센터 조항과 관련, 가장 난처한 태도를 보인 곳은 여성부였다. 여성부는 모든 자원봉사센터를 민간이 운영토록 강제할 경우 전국 지자체 직영의 여성자원활동센터(2년내에) 민간 이양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여성부는 시,군,구 단위에선 민간 위탁할 만한 여성단체들이 없고 별도의 예산도 없다면 이 조항에 “지자체도 센터를 설립 운영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두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다수의 기획단 위원들은 민간 운영을 주장해 일단 여성부의 의견을 소수의견으로 해 이 조항을 통과시켰다.

센터들에게 국가 및 지자체가 사업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음은 물론이다.

### 3. 이번 법안의 특징

그러면 이번에 합의된 법안은 기존의 자원봉사 법안들과 비교해 어떤 특징을 갖나? 다음은 필자가 생각하는 몇 가지 특징들이다.

#### 1) 인프라 면에서 기존 협의회안과 대동소이

이번 법안은 우선 자원봉사 인프라 면에선 한국자원봉사협의회가 지난해 만들어 각 정당에 제출한 자원봉사활동진흥법안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특징이라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협의회 안 역시 중앙에 국가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두고 민간 전달체계로 한국자원봉사협의회 및 센터들을 두는 것으로 했었다. 센터들 역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외에 각 분야별 센터들을 인정하는 것으로 했었다.

지난해 협의회 안과의 큰 차이라면 협의회 산하에 자원봉사진흥원을 두는 조항을 빼 것 정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2) 자원봉사의 기본원칙 명시

그러나 작년 협의회안과 비교해 두드러지게 달라진 점 중의 하나는 자원봉사의 기본원칙 및 기본방향을 명백히 했다는 점이다. 이 법안은 “자원봉사가 과연 무엇이나” 하는 세간의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자원봉사의 기본원칙은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임을 명백히 했다. 즉 이 3원칙에 벗어나 인센티브를 주거나, 강제성을 부여하는 등의 유인책은 모두 자원봉사의 기본원칙에 어긋남을 천명한 것이다. 또한 정부의 정책방향 역시 ‘민-관 협력의 기본정신 하에’ 추진토록 해 정부 독주를 막았다.

### 3) 모든 사회적 혜택 조항 삭제

과거의 모든 자원봉사 법안들과 다른 이 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일체의 ‘사회적 혜택’ 조항을 뺀 것이다. 작년의 협의회 법안의 경우 2조 기본방향에서 “자원봉사자의 사회적 공헌은 인정되어야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제 10조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기관 단체는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수행한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 경력을 인정하거나 혜택을 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법안에선 모두 이 조항들을 뺐다. 이는 자칫 사회적 혜택이나 경력인정 등의 조항이 자원봉사에 대한 잘못된 사회적 통념이나 제도를 만들어 낼 위험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또 실제로 최근 관련부처나 지자체, 또 일부 센터들이 무분별한 인센티브제를 도입, 운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이 자주 발견되기 때문이었다.

이 법안은 대신 ‘학교와 직장’에선 “자원봉사 활동의 공헌을 인정할 수 있다” 정도로 해 민간 조직체 차원에서 혜택을 인정해 주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했다.

### 4) 자원봉사 관리자의 삭제

지난해 협의회안에 있었던 자원봉사 관리자 조항도 이번 법안에선 삭제를 했다. 이는 필요한 사항이지만 아직은 여건이 성숙치 못했다고 다시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앞으로 협의회 등이 활성화되면 별도의 의견을 모아 전국적인 관리자 교육체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 5) 자원봉사센터의 문호 개방

이 법안에선 자원봉사센터를 아예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이라고 못을 박았다. 지난해 협의회 안은 단지 대략적인 용어설명만 하고 조문에서도 그 설립 및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었다. 이번에는 각 부처가 참가해 자신들의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자원봉사센터를 이 법에서 모두 인정해 주도록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했다.

이처럼 이 법에선 자원봉사센터의 문호를 공식 개방한 만큼 앞으로는 환경부, 법무부, 외교통상부 등도 산하에 자원봉사센터를 만들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법령을 고쳐 센터를 만들고 지원할 수가 있게 됐다 (물론 현재도 그렇지만). 이는 장차 총리실 산하의 자원봉사진흥위원회가 조정해 갈 제1차적 심의사항이 되지 않을까 싶다.

### 6)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규정

이 법안은 처음으로 자원봉사 단체에 대한 지원 규정도 명문화했다.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법안이 결국 협의회와 센터만을 위한 법안이 아니냐는 단체들의 항의를 의식했기 때문이다.

## 7) 정부 책임과 민간 책임을 명확히 구분

이 법안은 기존 협의회 법안에서 무분별하게 언급된 자원봉사 기관 단체들이라는 표현을 모두 삭제하고 국가 등 정부와 민간의 책임을 명확히 구분했다. 예를 들어 ‘보호’ 조항의 경우 과거엔 국가 및 지자체 외에도 민간기관 단체들이 보호의 책임을 지도록 했는데 이를 국가와 지자체만이 지도록 한 것이다. 반면 자원봉사 ‘관리’는 “자원봉사를 행하는 단체와 센터는--”으로 규정, 정부는 빼고 민간단체 및 센터들이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규정했다.

## 8) 협의회 설립에 각 부처 참여

이 법안은 부칙에서 현재의 협의회를 재창설, 재인가, 등기토록 했다. 타 부처 공무원들은 그 재인가 과정에서 행자부가 정관승인을 관련부처와 협의토록 요청했다. 이는 과거에는 없던 일로 그만큼 한국자원봉사협의회라는 전국 조직에 대한 각 부처의 관심과 참여가 늘 것을 예고하는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있다.

# 4. 법안 통과 의 전망

기획단이 만든 이 법안은 현재 (2004년 10월 10일) 행자부를 통해 법제처와 부처간 심의 중에 있다. 그러나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일부 조항에 대해 완강한 반대의견을 피력해 부처협의를 큰 난관을 맞고 있는 상태이다.

### 1) 재정경제부의 반대

재정경제부는 제12조의 조세감면, 제13조의 국 공유재산 사용이란 두개의 조항을 삭제토록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자원봉사단체들에 대한 정부의 간접적 지원조차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원봉사단체들에 대한 조세감면 또는 국 공유재산 사용허가 규정은 이미 2000년도에 입법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서 규정을 해 놓고 있는 사항이다. (재경부는 사실 그 법 이후에도 세법 등 관련법들의 개정을 하지 않고 있다).

이 재경부의 반대에 대해 행자부측은 일단 법안 발의를 위해 의견을 받아주겠다는 입장인 듯하다. 그것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만으로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 2) 기획예산처의 반대

보다 큰 문제는 기획예산처의 반대이다. 기획예산처는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자원봉사단체, 또 센터들에 대한 ‘국가의’ 예산지원 조항을 모두 삭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산처의 반대는 무척 완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예산처는 중앙정부가 개입, 민간단체들을 육성하려는 것은 지방분권화의 시대정신과 맞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실 예산처의 이 반대야 말로 행자부나 자원봉사계 입장에선 물러서기 어려운 가장 큰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정부의 예산지원이란 이 문제 때문에 자원봉사법안이 지난 10년간 표류했었기 때문이었다. 현재 행자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산처를 설득하고 있으나 워낙 입장이 완강해 쉽지 않다는 소식이다. 행자부는 3가지 중 하나 정도는 용인해 줄 수 있지 않느냐며 그 한 곳으로 센터에 대한 예산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나 그것도 쉽지 않다고 한다.

행자부는 협의회 지원의 경우 만약 법에서 제외된다고 해도 향후 행자부 자체가 국가사업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단체 지원의 경우 역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있으니 그것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그러나 센터의 경우 전국 200여 지자체가 모두 민간 센터를 설립토록 하기 위해서는 행자부가 연간 200여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지자체를 유도해야 하기 때문에 법 조항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결국 이 법은 자원봉사센터지원법으로 국한되어 버려 협의회나 타 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여하튼 행자부는 예산처가 끝내 세 조항의 삭제를 고집한다면 일단 그 의견을 받아 들여 국무회의를 통과시키고 나중에 국회 심의과정에서 동 조항들을 부활시켜 보겠다는 생각임을 밝히고 있다. 또는 자원봉사계와 합심해 국회의 의원입법으로 법안을 통과시켜 보았으면 하는 바람도 보이고 있다.

과연 그것들이 가능할지는 모르나 여하튼 이번 국회에서 자원봉사법을 입법하자는 그 의지와 취지만큼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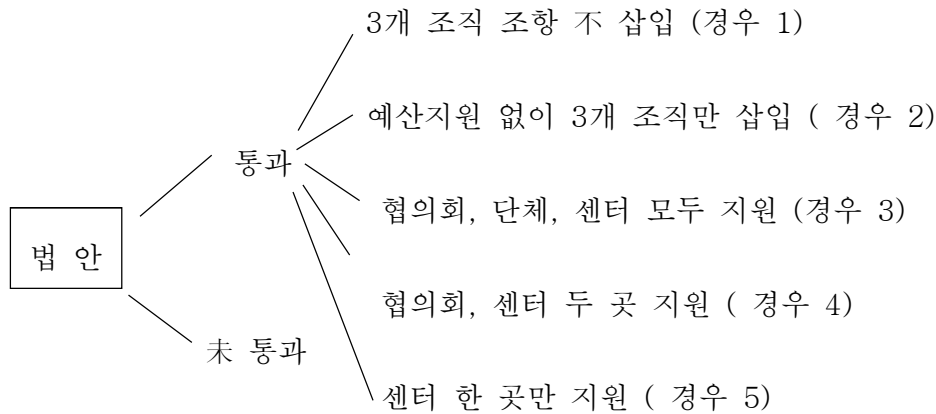
## 5. 법안 통과 시나리오와 자원봉사계의 과제

이상과 같이 지난 7월 기획단이 합의하고 공청회까지 통과한 자원봉사법안을 중심으로 법안 쟁점내용, 특징, 통과 전망 등을 살펴보았다. 설명한 바와 같이 동 법안은 현재 자원봉사계에 대한 국가의 예산지원 전망이 어려워지면서 올 연말까지의 정기국회 기간동안 어떤 진행과정을 거칠지 불투명한 입장에 있다.

만약 이번 국회 회기 중 법안이 통과된다면 어떤 법안이, 어떤 모습으로 통과가 될까? 또 그와 함께 자원봉사계가 풀어야 할 과제들은 무엇인가? 다음은 필자가 생각하는 법안 통과 시나리오에 따른 자원봉사계의 향후 과제들이다.

### 1. 자원봉사 법안통과 시나리오

기획단의 자원봉사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음 시나리오들 중 의 한가지로 반드시 귀착이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이 동 법안은 이번 국회에서 통과가 되거나 통과가 되지 못하거나 둘 중의 한 운명을 맞게 된다. 통과가 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말할 필요도 없이 협의회, 센터들이 향후 예산상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자원봉사계의 도약적인 발전도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어떤 형태이든 이번에 어떻게든 법안이 통과가 되어야 한다 (필자는 그 점에서 정말 예산처나 의회의 반대가 심하다면 아예 3개 조직 조항을 빼고 서라도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다. **경우 1**).

여하튼 법안 통과가 된다면 정부입법, 혹은 의원입법 둘 중 한 가지가 될 것이다. 어느 경우이든 정부 측에선 예산지원 문제에 따른 기획예산처와의 협의를 있어야 한다. 그 경우 예산처의 입장을 반영한 시나리오는 위와 같이 5가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어느 경우냐에 따라 자원봉사계 전체의 내부사정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위 5가지 어느 경우이든 법안이 통과된다면 조직체 예산지원 여부가 아닌 다른 조항들에 의해 한국 자원봉사계가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는 자원봉사법이 입법이 된다면 각 부처가 사업비를 늘려 자원봉사를 활성화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협의회, 센터 등에 대한 운영·사업비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각 관련부처가 현재보다는 훨씬 더 자신들의 사업을 늘려 가려 할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경우 1, 혹은 2**).

예를 들어 행자부의 경우 협의회나 센터 지원조항이 빠진다고 해도 자원봉사법이 입법이 된다면 그를 바탕으로 자원봉사 사업비를 늘리고 협의회나 센터에 현재보다 더 많은 사업을 위탁하려 할 것이라는 뜻이다. 혹 행자부가 어렵다 해도 문광부나 복지부 등은 틀림없이 현재보다 더욱 적극성을 보일 것이다. 이점에서 앞서의 언급과 같이 필자는 자원봉사법이 입법만 된다면 한국 자원봉사계는 현재보다 훨씬 더 한 장족의 발전을 이룩할 것으로 전망을 한다. 이는 자원봉사계 입장에서 새로운 도전이며 기회가 아닐 수 없다.

먼저 법안이 통과된다면 예산지원 조항 여부와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는 자원봉사계의 변화와 그에 따른 과제들을 살펴본 후, 이어 3가지 예산지원 형태 (**경우 3, 4, 5**)에 따른 변화와 과제들을 살펴보겠다.

## 2. 법안통과 후 자원봉사계의 변화와 과제 (경우 1,2,3,4,5)

### 1) 자원봉사의 순수성에 대한 개념 확산

우선 법안이 통과, 시행되면 자원봉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게 높아질 것이다. 정부 및 지자체의 의욕이 높아지고 초,중,고교 등에서도 관심과 참여가 크게 늘 것이다. 그럴 경우 무엇보다 우리 민간 자원봉사계는 자원봉사의 순수성을 되살리는 작업부터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현행 우리나라 자원봉사 운동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면서 상당부분 자원봉사 활동을 왜곡시키는 사례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단은 이 같은 사정을 감안, 이번에 만든 법안이 한국 자원봉사 운동의 기본 이념, 방향, 정의, 개념 등을 총괄 규정하는 ‘자원봉사의 기본법’적인 성격을 가지도록 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 사회적 인정 등을 일체 하지 않을 수는 없다. 오히려 자원봉사자를 격려하고 인정하는 그 같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 내용이 과도하고, 일반화, 상례화 되어 간다는 점이다. 이 법안에선 자원봉사의 기본원칙들을 정했다. 즉, “사회적 보상, 인정, 강제 등등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자원봉사의 기본원칙’은 아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였다. 자원봉사 지도자들은 이 같은 법의 정신을 어떻게 우리사회에 확산시켜 나갈 것인가를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 ① 기관 단체, 센터들의 의식 전환

먼저 자원봉사 기관 단체, 센터 종사자들부터 의식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소위 자원봉사 관리(지도)자들 중 많은 사람들은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정, 보상을 필요한 일을 넘어 당연한 것으로까지 생각하고 있다. 특히 많은 센터들이 자원봉사자를 모으기 위해 과도하다 생각될 만큼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그들의 고충을 모르는 바 아니나 이는 분명 자원봉사의 가치 면에서 볼 때 잘못된 일이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회적 공헌인정, 보상은 불규칙적, 비예측적, 그리고 사후적이어야 한다. 그래야만 자원봉사의 순수성이 유지될 수 있다.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등 많은 대학들이 입학전형시 학생들의 자원봉사 활동 경력을 보지만 그러나 그것은 중요한 사정(査定)변수라 해도 필수가 아닌 참조사항일 뿐이다. 센터나 정부가 제공하는 인센티브, 보상 등도 마찬가지로 지어야 한다. 향후 자원봉사 관리자들의 의식전환을 위해 자원봉사협의회, 센터협회, 자원봉사 포럼 등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교육 훈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 ② 중, 고, 대학에서의 제도변화, 계몽활동

중, 고, 대학에서 시행되고 있는 종합생활기록부, 내신반영, 사회봉사 학점제 등등의 강제적 행위들도 이 법의 통과와 함께 전면 재검토되어야 할 일이다. 특히 중, 고학생들의 봉사 활동은 현재의 방법에서 크게 바뀌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자원봉사계와 교육부, 교육청이 함께 ‘학생 자원봉사개선기획단’ (가칭)을 구성, 발전 방향을 연구·시행했으면 한다.

## 2) 자원봉사 운동의 민간주도

자원봉사의 개념이 순수토록 해야 할 과제와 함께 자원봉사 운동을 민간이 주도케 해야 할 일 역시 향후 한국 자원봉사계의 핵심적인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 법안의 통과와 함께

이제 자원봉사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 개입이 제도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금도 행자부, 여성부외에 문광부, 복지부까지 나서 시,군,구 단위에도 자신들의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키로 하고 시범작업을 펼치고 있다. 법이 통과되면 각 중앙 부처들의 개입이 훨씬 더 늘어날 것이다.

관의 지원은 바람직하면서도 자칫 지나친 개입은 ‘新 관변운동’을 초래케 할 수 있다. 따라서 만약 민간 자원봉사계가 관의 개입을 적절히 조절, 조정하는데 실패한다면 이 법은 자원봉사 발전에 藥이 아니라 毒이 될 것이다. 향후 한국자원봉사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 3) 민-관 파트너십의 제도화

민이 앞장서고 관이 지원하는 민-관 파트너십 체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향후 자원봉사 자원 공·사 인프라들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 이를 법안이 규정한 각 민, 관 인프라들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① **자원봉사진흥위원회:** 총리실 산하 각 관련부처 장관들과 민간전문가들로 (국가)자원봉사 진흥위원회를 두어 국가차원의 자원봉사 시책개발과 심의를 하도록 했다. 그리고 산하에 실무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과연 이 진흥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는 누구로 할 것인가? 또 민간 전문가로는 누가 참가할 것인가?

위원장이 총리가 되고 간사가 행자부 장관이 될 경우 자칫 이 위원회에서 민간전문가들의 역할은 자문위원 정도로 전락될 수가 있다. 참여정부의 타 정부 위원회들과 같이 민·관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간사 역시 민·관 양 체제로 하는 것이 어떨까 (실무위원회 포함)? 또 협의회의 회장 혹은 사무총장은 진흥위 및 실무위의 ‘당연직’ 멤버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② **한국자원봉사협의회:**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앞으로 민간 전국기구로서의 위상을 갖고 한국의 자원봉사 운동을 이끌고 갈 막중한 사명과 책임을 갖는 단체가 된다. 따라서 그에 걸맞는 조직, 예산, 인력, 활동 등이 있어야 한다.

법안에선 이번에 협의회를 전면 개편토록 했다. 아예 대통령령으로 운영 및 조직을 새로 조직토록 했다. 또 정관을 재구성, 행자부에 재인가를 받도록 법안 부칙에 규정을 했다. 따라서 법안 통과 직후 기획단이 중심이 되어 협의회를 새로 조직하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그를 바탕으로 협의회 자체에서 이사회 및 임시총회를 소집, 정관을 바꾸고 새 임원진 등을 선출해야 한다. (필자는 대통령령이 발효되는 시점에 맞추어 협의회 내부에서 20여 명의 전문가들로 ‘한국자원봉사협의회 발전기획단’ (가칭)을 구성, 재조직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다).

이 새로 조직된 협의회는 향후 정부, 특히 진흥위원회 및 행자부와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우선 협의회가 타 직종의 법정 협의체 (예,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들과 달리 진정 민간기구로 작동하려 한다면 예산의 정부 의존성부터 탈피토록 해야 한다.



다행히 법에 의해 운영 및 사업비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그 정부 예산외에 회원단체들의 회비, 협찬·기부금 등 순수 민간예산이 상당부분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 같은 재정의 독립을 위해선 상임 및 공동대표 등 임원진들이 자원봉사 기관 단체 대표 등 소위 수혜자들로만 이루어져선 안 된다. 기업가, 퇴직 정치인, 언론인 등 사회 타 분야의 지도층 인사들이 대표·이사 등 임원진으로 상당수 포진해 있어야 한다.

이처럼 협의회가 예산 및 조직에서 정부와 대등한 위치에 서야만 관과의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다. 그와 함께 회원 단체들 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 화합, 비정치성, 전문적 활동 등등 전국기구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행동을 할 때야 만이 정부와 대등한 민-관 파트너십을 구현할 수 있다. 앞으로 협의회를 재구성할 자원봉사계 지도자들은 그 점에서 ‘열린 마음’이 되어야 할 것이다.

**③ 자원봉사센터:** 법정단체가 되는 자원봉사센터들이 향후 지자체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무척 중요하다. 아마 이 관계 설정에 따라 한국의 자원봉사 운동이 ‘신 관변운동’이냐, 아니냐가 결정될 것이다. 법에 따르면 센터의 설립주체는 지자체(관)이기 때문이다. 만약 중앙 정부의 지원이 없다고 해도 법안이 통과만 된다면 많은 지자체들이 센터를 설립, 지원하려고 할 것이다.

자원봉사센터 (특히 종합자원봉사센터)들은 향후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 지원의 ‘복지관’들과 같은 형태가 될 것이다. 즉 지자체에서 설립, 민간에 위탁을 한 뒤 예산지원을 하는 그런 형식의 운영이다. 현행 복지관들처럼 앞으로 자원봉사센터들 역시 지자체에 철저히 예속될 수밖에 없게 될 상황이다.

그러나 자원봉사센터가 사회복지관과 조금 달리, 민간 주도의 기구로 남을 수는 없을까? 어떻게 해야 그게 가능할까? 필자는 그 점에서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본다. 역시 앞의 협의회 논의에서와 마찬가지로 첫째는 예산의 독립, 둘째는 조직의 독립이다.

관으로부터의 ‘일정한’ 예산 독립을 위해 센터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지역의 자체 모금을 활성화 하는 것이다. 지역 모금 방법은 협의회처럼 재계의 협찬금 등을 받고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모금운동을 펼치는 방법밖엔 없다. (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반대할 사항이나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둘째, 조직의 독립은 비교적 쉬울 수 있을 것이다. 지역의 민간유지들을 이사, 운영위원회 등 대거 임원진에 끌어 들이는 것이다.

#### **④ 예산지원의 방법, 평가, 감독, 기타**

법안이 기획단안으로 통과되어 정부가 예산지원을 할 경우 그 지원의 방법은 어떻게 되고, 평가 또한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협의회에 대한 예산지원은 행자부가 운영비, 혹은 사업비로 나누어 직접 집행하고 그 경우 평가 또한 행자부가 하고, 필요하면 진흥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역 센터들에 대한 행자부, 문광부, 복지부 등 중앙 각 부처의 예산지원은 어떤 방법을 취할 것인가? 중앙부처가 지자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예산을 내려 보낼 것인가? 그 평가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지역 센터에 대한 행자부의 예산지원이 가능해 질 경우 행자부는 지자체에 교부금을 ‘직접, 또 일괄적으로’ 내려 보내는 현재의 방식과 같은 방식 외에 다른 방식은 없을까? 협의회와 협의, 민-관 평가단을 구성해 차등 지원하거나, 지자체와 매칭펀드로 지원하는 방법은 없을까? 여하튼 앞으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 3) 자원봉사 관리 및 교육 훈련

#### ① 체계적 활동 관리

자원봉사자 관리라 함은 관리와 함께 교육 훈련이 포함된 개념이다. 이는 크게 둘로 나누어질 수 있다. 첫째는 일반 자원봉사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이고, 둘째는 자원봉사 지도자(조정자, 관리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이다. 자원봉사법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전국적인 자원봉사 관리 및 교육 훈련작업이 등장해야 할 판이다. 이는 자원봉사 운동이 크게 늘어나 체계화와 정리 정돈을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법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법이 통과되면 기획단은 대통령령에 한국자원봉사협회의 정관에 들어있는 ‘자원봉사진흥원’을 되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된다. 그와 함께 진흥원 설립 작업을 본격화해야 하리라 판단된다.

그를 위해 행자부는 협의회에 별도의 예산(사업비)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이는 조사 연구, 정책개발 건의, 국제교류 홍보 등 법에 규정된 협의회 전문적인 사업을 위해서도 진흥원이 곧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진흥원은 또 자원봉사 관리자에 대한 중앙차원의 교육·훈련작업을 해야 한다(이를 위해 법안에선 협의회 사업에 교육 훈련사항을 재 삽입했다. 행자부는 위탁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중앙에선 ‘자원봉사관리자’(volunteer managers)(지도자, 조정자)급에 대한 교육 훈련 및 관리·평가가, 지역에선 ‘일선 자원봉사자’(volunteers)에 대한 교육 훈련이 진행되어야 한다. 필자는 그 교육 주체가 중앙의 경우는 협의회, 지역은 센터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② 보험 등 안전관리

이 법안에선 자원봉사자 보험 등 보호의 책임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한정시켰다. 그러나 장차 그 보험의 실제 운영주체는 협의회, 혹은 지역 센터들이 될 것이다.

과연 평소의 자원봉사 활동도 보험을 들게 할 것인가? 아니면 재난재해 참여 봉사자만 보험을 들게 하나? 만약 센터에 보험을 들지 않고 봉사활동을 하다가 사고를 당할 경우 센터, 또 정부는 일체 무책임만을 주장할 수 있을까?

이 보호조항의 시행령은 만일 보호조치(예, 사전교육 등)가 충분치 못해 자원봉사자가 사고를 당했다면 해당 기관 단체, 센터를 처벌도 하는 방향으로 제정되지 않을까 싶다. 여하튼 장차 깊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 4) 행정의 전국 직렬 및 병렬체계

자원봉사 진흥을 위해 중앙에는 자원봉사진흥위원회가 설치된다. 시·도까지는 조문화 하진 않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시·도 진흥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을까 싶다. 그럴 경우 과연 중앙 및 시·도 진흥위원회간엔 어떤 관계가 될까? 또 행자부 및 타 부처들 간의 관계, 또 각 중앙부처와 시, 도간, 또 시·군·구간 어떤 행정 직렬의 모습을 띠을까?

또 정부와 민간간의 관계 역시 복잡할 수 있다. 전국협의회는 하나로 뭉칠 수 있다고 하고, 각 분야별 센터마다 중앙 센터를 두고 부처별 지원을 받는 작업에 나설 수 있다 (예, 청소년 전국센터, 여성 전국센터 등). 자칫 잘못하면 이 법안 통과 후 한국의 자원봉사계는 각 정부부처마다 자기분야의 자원봉사를 진흥하겠다는 백가쟁명(百家爭鳴)식의 복잡한 조직과 지원체계를 형성할 수가 있는 것이다.

자원봉사라는게 본래 그런 게 아니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법이 있는 한 무엇인가 통일된 한 그림은 있어야 할 일이다. 앞으로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할 사항이다.

#### 5) 자원봉사 기관 단체 및 센터 간 관계

법안이 통과되면 민간 자원봉사 기관 단체들과 센터 등 지역 인프라간의 관계 설정이 매우 중요해 질 것이다. 지역에서 센터가 성공하느냐의 여부는 관(지자체)과 어떤 관계로 지내느냐 외에 주변의 타 자원봉사 기관 단체들과도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지내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것은 법안 추진과정에서 지역 센터들이 자원봉사 ‘지원 인프라’임을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지역의 종합자원봉사센터들은 또 청소년, 여성센터 등 타 분야별 자원봉사센터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또 중앙의 한국자원봉사협의회와도 어떤 관계를 맺느냐의 문제를 안고 있다.

##### ① 종합-분야별 센터 간 관계

과연 기초 시, 군, 구 지자체 단위에도 청소년, 여성, 복지 등 분야별 자원봉사센터들이 들어설 것인가? 그럴 경우 현행 종합자원봉사센터들은 어떤 위상과 역할을 가질 것인가?

필자는 법이 통과되면 분야별 부처들이 시, 군, 구 단위에도 자신들의 분야별 자원봉사센터들을 설립하려고 할 것으로 전망한다(이미 여성부외에 문광부, 복지부에서도 시,군 단위 조직설립을 시작했다). 또한 그를 위해 예산처를 향해 예산경쟁을 할 것으로 본다. 그럴 경우 지자체의 장은 어떤 입장을 취할까? 지자체 입장에서 모든 센터들을 하나로 통합하려고 할까?

필자는 지자체가 통합할 수도 없을 것이고 또 통합이 가능하다고 해도 정치인인 지자체의 장의 입장에서 굳이 자원봉사자들이 모이는 여러 조직체를 하나로 통합해 왜소하게 만들려고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행정가의 입장에서조차 지자체 예산을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럴 필요를 느끼지 않을 것이다.

만약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시, 군, 구의 종합자원봉사센터들은 어떤 위상과 역할을 가질 것인가? 여성, 청소년, 복지 분야 자원봉사자들을 타 센터로 다 뺏긴 상황에서 과연 무슨 ‘종합’을 할 것인가?

자원봉사센터들이 난립 양상을 보일 때면 틀림없이 대책도 등장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 시기가 언제냐는 것이다.

## ② 센터-단체 간 관계

지역의 종합자원봉사센터들과 자원봉사단체들 간 향후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이 법안은 센터들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을 했다. 앞으로 시행령이 만들어지면서 그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겠지만 필자의 생각은 어떤 형태로든 센터-단체 간 연계·협력(조정)을 요구하는 조항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전망한다. 이는 앞서 언급했듯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 활동(개인, 또는 단체)을 지원하는 ‘지원 인프라’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재결성되는 시,군,구 단위에서의 센터-단체들 간 상호 협력의 모습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단체협의체가 구성돼 센터를 직접 위탁·경영하는 방법(예, 경기도자원봉사단체협의회), ▷센터 내부가 직접 단체 협의체가 되는 방법(이사들을 단체장들로 구성), ▷센터와 단체들이 상호 별개의 조직으로 존재하면서 협력하는 방법 등이다. 여하튼 어떤 형태로든 센터가 단체들로부터 자신들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존재’로 인정을 받아야만 단체-센터 간 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본다.

## ③ 센터-협의회 간 관계

시·도 단위에서 종합자원봉사센터와 단체들 간의 관계가 시·군·구 단위에서의 그것과 같을 수는 없을 것이다. 또 같아서도 안 된다. 필자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광역시·도의 경우 앞으로 시·도 자원봉사협의회가 자연스럽게 결성되어질 것으로 전망을 한다(모든 시, 군, 구 단위에서까지는 협의회가 만들어 지진 않을 것이다). 그럴 경우 시·도 협의회와 시·도 종합자원봉사센터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해 필자의 바람은 차라리 현재의 시·도 종합자원봉사센터가 앞장서 시·도 자원봉사 협의회를 구성하고 ▷센터는 ‘시·도 자원봉사진흥원’으로, ▷협의회는 ‘시·도 협의체’로 각각 분리, 남도록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다. 센터가 그 일에 앞장 설 때 현재의 센터와 단체 간 갈등이 시·도 차원에서부터 해소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필자는 시·도 종합자원봉사센터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진흥원의 그것이라고 생각한다. 광역시·도 차원에서 단체들의 활동을 돕고 자원봉사 지도자 교육·훈련, 조사·연구, 정책개발 및 건의 등등의 일인 것이다. 시·도 센터가 마치 기초지자체의 센터들처럼 일선 자원봉사자나 모집해 교육하고 배치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사실 그 잘못 때문에 광역센터와 기초센터들 간에 갈등을 빚는 사례가 적지 않다).

필자는 광역 센터가 광역 시·도 자원봉사진흥원으로 굳건히 서고 그들이 중앙 협의회의 자원봉사진흥원과 한 라인으로 연결이 될 때 비로써 센터-단체 간 갈등이 해소되고, 언젠가 센터들이 그토록 원하는 ‘한국의 촛불재단’(The Points of Light Foundation)이(혹 별도의)

전국기구로, 또 단체들의 축복 속에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 6. 예산지원 시나리오 (경우 3, 4, 5)에 따른 자원봉사 조직 간의 관계

지금까지 자원봉사법안이 어떤 모습으로든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한국 자원봉사계의 일반적인 (general) 변화와 과제들을 살펴보았다. 앞서 언급한대로 필자는 어떤 모습이든 ‘법안만 통과’ 된다면 한국 자원봉사계는 이상과 같은 과제들을 가지면서도 장족의 발전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처의 개입으로 조직체들에 대한 예산지원 내용이 달라질 경우 자원봉사법안은 자원봉사계 내부에서 또 한 차례 정치적 합의과정을 거치면서 상정 혹은 통과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

이제 끝으로, 국회통과 과정에서 협의회, 단체, 센터에 대한 예산지원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다.

### 1. 협의회, 단체, 센터가 모두 지원될 경우 (경우 3)

기획단의 원안대로 협의회, 단체, 센터에 대한 예산지원 규정이 모두 살려질 경우 자원봉사 기관 단체, 센터들 간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는 이미 지난 10간의 갈등을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기획단을 통해 녹여냈기 때문이다.

### 2. 협의회, 센터 두 곳만이 지원될 경우 (경우 4)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조항이 빠지고 협의회, 센터 두 곳만이 지원될 경우 단체들이 반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대로 단체에 대한 지원 조항은 이번에 처음 등장한 것이고 그 또한 ‘사업비’에 국한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으로 커버될 수 있기 때문에 설득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본다. 기획단과 협의회가 앞장 서 단체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 3. 센터 한 곳만 지원될 경우 (경우 5)

가장 문제가 복잡해질 경우는 바로 이 경우이다. 센터만이 지원되는 형태로 법안이 통과되려 한다면 단체들, 또는 협의회가 틀림없이 반대 하고 나설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 10년 간 단체, 센터 간 갈등을 빚다가 결국 단체들이 양보하고 '자원봉사 센터 지원법'만을 만들어 준 꼴이라며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발이 심해질 경우 아무리 정부, 의회가 법안 통과에 긍정적이라 해도 입법은 어려워질 것이다. 협의회는 경우 행자부가 사업위탁을 통해 꾸준히 예산지원을 해 주겠다고 약속해도 믿지 않으려 할 것이다.

만약 예산처, 또 여. 야가 이번 국회에서 센터 지원조항만 통과시켜주겠다고 한다면 협의회, 단체들은 어떤 주문을 할 까? 무작정 반대만이 아닌 어떤 정치적 주문을 하진 않을까? 필자는 크게 다음의 두 가지 주문이 있지 않을까 전망을 한다.

첫째는 **지역 단위에서** 단체들이 센터를 공동운영, 혹은 사업 연계를 강제토록 법에서 요구할 것으로 본다. 이는 사실 오랫동안 단체들이 요구해 왔던 사항으로 만약 ‘센터 지원법’이 된다면 단체들은 틀림없이 다시 이 같은 주장을 펼 것이고 센터들 입장에서도 그 주장을 그냥 무시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둘째는 **전국 단위에서** 협의회 측의 주문이다. 협의회는 공동대표 등 임원진은 아마 다음과 같은 논리를 세울 것이 틀림없다. 자원봉사센터협회의 경우 앞으로 지역센터들로부터 회비를 받아 탄탄히 운영할 수 있으나 경상비 예산 지원이 한 푼 없는 협의회는 존재의 기로에 설 것이기에 그냥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역시 일리있는 주장이 아닐 수 없다.

협의회가 이같이 주장하고 나설 때 센터협회는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 센터들이 국가의 예산지원을 받는 법정단체가 되느냐 마느냐의 선택을 해야 할 중대 사안일지 모른다.

필자는 협의회와 센터협회간의 토론과 대화 과정에서 두 전국기구간의 통합 얘기도 나오지 않을까 전망을 한다. 이는 작년 6월 협의회가 새 출범한 후 과거의 한국자원봉사단체협의회(한봉협) 쪽에서 계속 제기하는 문제이기도 하다.<sup>2)</sup> 만약 이 문제에 대해 센터협회 쪽에서 긍정적이 된다고만 하면 한국 자원봉사계는 또 한번의 대 타협을 하고, 이는 법이 통과되느냐의 여부와 상관없이 한국 자원봉사계의 발전에 역사적인 분기점이 될 것이다. 필자는 그같이만 된다면 협의회란 명칭도 자원봉사총연맹, 한국촛불재단 등등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본다.

## 7. 마치며

지금까지 많은 자원봉사법과 관련, 많은 문제에 대해 필자의 의견을 개진했다. 여러 가지 논점이 있으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번 국회에 자원봉사법이 입법되느냐는 점이다. 조직체들 간의 관계 설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그 법안의 국회 통과이기 때문이다. 법만 입법된다면 조직체들에 대한 예산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한국 자원봉사계는 많은 변화를 겪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 자원봉사계가 과연 이번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까? 법안 통과와 중요성을 깨닫고 다시 한번 전체의 지혜와 중지를 모을 수 있기를 간곡히 바라마지 않는다. 끝.

---

2) 특히 협의회는 서영훈 상임대표가 그 같은 입장이다. 서 대표는 “당시 한봉협은 해산을 했는데 왜 센터협회는 해산을 하지 않았느냐”고 늘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 분과토론 1 발제

# 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운영모형

구 자 행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사무처장>

# 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운영모형

구 자 행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사무처장

지난해 6월 3일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참여, 변화를 향한 연대의 희망찬 발걸음”이라는 슬로건 하에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창립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02년 12월 23일 자원봉사 현장 전문가와 교수 등이 중심이 되어 (가칭) 한국자원봉사재단 설립준비위원회 구성을 위한 1차 모임으로 시작하여 수많은 회의, 논의에 논의를 거듭하는 진통 속에서 한국자원봉사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창립되었다는 경과보고가 있었으며, 한국자원봉사계가 하나로 뭉쳐 힘을 결집하고 자원봉사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을 다짐하는 창립선언문도 있었다.

어느덧 ‘협의회’가 창립된 지 1년하고도 4개월이 지나버렸다. 우리는 은행회관에서 치러진 창립대회의 떠들썩했던 잔치의 기억들이 채 사라지기전에 또 다시 ‘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운영 모형’이라는 다소 버겁기도 하지만 어쩌면 성가신 주제의 토론을 하자고 얼굴을 맞대고 있다. 그동안 ‘협의회’를 지켜볼 때마다 계륜(鷄肋)의 고뇌를 지울 수 없어 참으로 답답한 심정이었다. 그렇지만 한국 자원봉사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기 위해서 ‘협의회’라는 난제는 반드시 넘어가야 할 산이기에, 우리 모두 이번 토론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결자해지라고 한다. ‘협의회’ 창립을 주도했던 사람들과 단체의 책임성과 헌신성이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고 있다.

역사는 반복되는 듯하지만 전진한다고 한다. 비록 당시 ‘협의회’ 창립대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얼굴에 교차되었던 ‘희망’과 ‘우려’중에서 걱정했던 바가 현실화된 측면이 많이 있더라도 우리는 단순히 1년 4개월 전의 과거로 회귀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우리는 1년 4개월 동안의 사업과 시행착오 속에 서로를 더 많이 알 수 있었고, 문제의 본질에 더 많이 근접해갔으며, 창립 당시의 거품들이 빠져나가면서 더 많이 냉철히고 객관화될 수 있는 값비싼 기회와 성과를 얻었기 때문이다.

역사에서 오류의 반복은 청산할 것을 청산하지 못할 때 생기기도 하지만, 반면에 과거의 모든 것을 무로 돌리는 청산주의 사관 역시 역사의 오류를 반복시키는 결정적 구실을 한다고 한다. 현재의 ‘협의회’에 대한 애정이나 관심의 정도는 저마다 다를 수 있다. 또한 ‘협의회’의 발전방향이나 운영모형에 대해서는 방점이 다를 수 있다.

그렇지만 분명히 해야 할 사실이 있다. 난상토론과 합의의 과정을 거쳐 창립된 ‘협의회’의 현실적 실체를 인정하는 것이다. ‘협의회’가 아무리 문제가 있더라도, 자원봉사계 내부의 ‘신뢰의 파괴’가 가져올 후유증이 더 크기 때문이다.

오늘 토론의 주제는 바람직한 ‘협의회’ 운영모형이지만, 이면에는 그동안 ‘협의회’의 사업방향과 운영과정 중에서 노정된 문제를 진단하며 해결하려는 새로운 출발이라 믿는다. 따라



서 이 글에서는 정형화된 ‘협의회’ 운영모형을 제시하기 보다는 ‘협의회’의 조직구성과 활동 방향 및 방법에 대해 참가자들의 의견을 끌어내기 위해 실마리 구실을 하고자 하였다.

아무튼 참가자들의 활발한 토론을 통하여 발제의 한계를 뛰어넘는 ‘협의회’ 운영 모형들이 제출되고 합의되기를 기대해본다.

## 1. 한국자원봉사협의회 필요성과 역할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왜 필요한가?’라는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하나의 정답이 있다면 ‘운영모형’에 대한 기본골격은 쉽게 정리될 것이다. 그렇지만 자원봉사계 현실은 ‘협의회’의 존재이유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와 합의가 일견 형성되어있는 듯하지만, 기실(其實) ‘협의회’를 바라보는 기본시각 자체에도 다양한 편차의 스펙트럼(spectrum)이 존재하고 있다. 물론, 스펙트럼의 존재는 전국적인 조직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분모이기에 그다지 큰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협의회’ 사업방향 및 과제에 대한 ‘최대공약수’를 잘 설정하고, ‘협의회’ 활동이 회원단체들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침범하지 않는다면 다양한 스펙트럼은 조직운영의 원동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자원봉사계는 지난해 ‘협의회’ 창립 이전부터 논의되기 시작하여 최근 자원봉사진흥법(안)을 마련할 때까지 길고도 오랜 시간을 ‘협의회’의 필요성과 사업과제라는 최대공약수와 최소공배수를 찾기 위해 무수한 논의를 해오다 최근 자원봉사진흥법(안)을 마련하면서 어렵게 합의점을 도출하였다. 물론, 이해관계자들의 명쾌하고 흔쾌한 동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다소 복잡한 현실과 논의과정을 감안하면 자원봉사계의 커다란 성과이기에 자원봉사의 전망을 밝게 하는 청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

**‘협의회’의 정체성(최대공약수)과 사업과제(최소공배수)는 조직의 근간을 유지하는 것이며 사업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원칙이다.** 자원봉사계 합의의 결과물은 자원봉사계의 활동지형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한 집행부나 대표단의 자의적인 판단 속에 함부로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협의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규정이 단체가 개인이 **처해있는 위치에 따라 불만족스러운 점이 있더라도 ‘합의사항’에 대한 존중과 책임성이라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최대한 지켜져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에서는 ‘협의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그동안의 논의의 배경과 과정은 생략하고, 자원봉사진흥법(안)에 담긴 내용을 토대로 도표로 정리하였다.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최대공약수<sup>3)</sup> 및 최소공배수<sup>4)</sup>>**

소인수(素因數)		최대공약수 (정체성)	최소공배수 (사업영역)
활동 주체	·연령별(아동 ~ 노인) ·성별(남성, 여성) ·형태(개인, 단체) ·전문성(단순, 숙련공, 전문가) ·기타(자발성, 준자발성)	○중앙인프라 -협의조정 -지원활동 -대정부활동	○회원단체 협의·조정 ○회원단체 지원 ○대국민 홍보활동 ○정책개발 ○조사연구 ○정보연계 ○위탁 사업 ○자원봉사정책 정부 건의 ※교육
활동 성격	·서비스 공급, 수혜, 중계 등		
활동 장소	·실내, 재가, 야외, 기타		
활동 영역	·지역사회개발 ~ 국제협력사업		
활동 목표	·자아실현 ~ 성숙한 시민사회		
활동 방법	·홍보, 교육, 조사연구, 프로그램 등		
활동 재원	·후원, 보조금, 자부담, 프로포잘 등		

**2.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조직 구성 원리와 체계**

앞에서 언급하였지만 ‘협의회’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한 견해의 차이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그러나 ‘협의회’의 존재를 현실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는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즉, 자원봉사단체(기관)와의 협의·조정과 자원봉사 진흥과 회원단체의 지원을 위한 중앙인프라(infrastructure)서의 역할이며 끝으로 대정부 창구 역할 및 국제교류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다.

**1)조직구성의 원리**

위의 3대과제를 ‘협의회’가 수행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조직구성의 원리에 바탕 한 조직체계수립이 필요하다. 먼저 조직구성의 원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1차 협의체의 구성**

자원봉사단체(기관)간의 **효율적이고 책임성 있는 협의·조정**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의 조건에 제한을 두거나 사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전국에는 집계되지 않을 정도로 수많은 자원봉사단체(기관)이 존재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전국에 산재한 수많은 자원봉사단체(기관)가 ‘협의회’에 가입한다는 것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설사 가입한다 하더라도 협의·조정의 현실적 실효성을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많은 자원봉사단체(기관)간의 협의·조정의 1차적 역할은 ‘협의회’의 회원 개념이며 하위범주로 분류될 수 있는

3)최대공약수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자원봉사계가 ‘협의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하고 합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통분모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하여 사용한 것이다.

4)최소공배수는 자칫 ‘협의회’의 사업이 회원단체의 사업영역을 침해하거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협의회’ 사업의 최대 범위가 최소공배수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각각의 유형별 자원봉사단체(기관) 협의체가 자율적으로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협의회’에 회원으로 가입할 유형별 1차 협의체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는 협의·조정과정 중에서 발생될 수 있는 1차 협의체 회원간의 의견불일치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시킬 뿐만 아니라, 향후 자원봉사활동의 체계화와 네트워크를 위해서 반드시 실현시켜야 할 과제인 것이다. 또한 ‘협의회’ 차원에서 협의·조정될 내용을 분명히 하면서도, 큰 흐름을 놓치지 않는 순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초기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미 1차 협의체가 구성된 곳(예, 대사련 등)은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1차 협의조정체가 없는 단체(기관)들은 누구와 어떻게 1차 협의체를 구성할 것인가의 문제로 매우 혼란스러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역설적으로 자원봉사단체(기관)간의 네트워크 대상이나 내용이 정리되지 못했다는 근거일 뿐, 모든 단체(기관)들이 헤쳐 모여 식으로 ‘협의회’에 가입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결코 아니다. ‘협의회’는 안정성과 책임성을 기초로 전국적 사안의 협의·조정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회원의 가입조건 및 조직구성의 방식도 전국적 규모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유형별 1차 협의체 단위로 ‘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회비, 의결 수, 조직의 대표성 등 사전에 협의되고 실무적으로 검토해야할 내용들이 있다. 이 문제는 뒤에서는 구체적인 조직체계를 다룰 때 언급하기로 하겠다. 다만, ‘협의회’ 조직구성의 원리로 제안한 유형별 1차 협의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도표화 하였다.

**\*회원구성**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유형	1차 협의체(회원)	구성	비고
공급단체(기관)	일반자원봉사단체협의회	일반 각 자원봉사단체	이사, 대의원
	기업자원봉사단체협의회	전국기업사회공헌팀	이사, 대의원
	대학생자원봉사협의회	대사협 회원	이사, 대의원
	재난극복자원봉사협의회	재난극복자원봉사팀	이사, 대의원
	전문기관협의체	자원봉사교육기관 등	이사, 대의원
	기타(종교 등)	필요시(이사회 승인)	이사, 대의원
수혜단체(기관)	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이사, 대의원
	상담기관	상담전문기관	이사, 대의원
	기타	필요시(이사회 승인)	이사, 대의원
중계단체(기관)	종합자원봉사센터협회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이사, 대의원
	청소년자원봉사센터협회	한국청소년센터협회	이사, 대의원
	여성자원봉사센터협회	여성자원봉사센터	이사, 대의원
지역 대표	서울지역	서울지역연합체	이사, 대의원
	경기지역	경기지역연합체	이사, 대의원
	강원지역	강원지역연합체	이사, 대의원
	충청지역	충청지역연합체	이사, 대의원
	영남지역	영남지역연합체	이사, 대의원
	호남·제주지역	호남·제주지역연합	이사, 대의원

\*활동유형별, 지역별로 분류한 예시로 조정 가능함

\*개별 자원봉사단체(기관)은 1차 협의체에 중복가입 가능함.

## ②조직과 개인의 결합 - 위원회

‘협의회’가 자원봉사진흥 및 자원봉사단체(기관)의 활동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중앙인프라의 집행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중앙인프라의 역할은 자원봉사단체(기관)에서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적합한 내용을 제공하고, 단체(기관)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슈퍼비전(supervision)과 쟁점 및 이견 사항에 대해 협의·조정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협의회’가 중앙인프라의 역할을 다하기 기본적으로 전문성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개인’과 ‘단체’가 적절하게 배합되어 조직이 구성**되어야 한다.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정 조직에 소속되지는 않았지만 자원봉사 관련분야에 이론 및 정책연구능력, 풍부한 현장경험, 실무집행력을 갖춘 개인들을 ‘협의회’의 골간조직에 편입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계의 전문가들과 연대하고 협력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제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위원회의 최대 장점은 자원봉사단체(기관)에 속해있든 그렇지 않든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제반의 사업영역에서 전문성과 영향력을 가진 인사들로 구성되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사무국 직원들이 실무집행에 매몰되어 방향 감각을 할 때마다 **방향타(方向舵)의 역할**을 해줄 뿐만 아니라,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받는 사업에 있어서 위원들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전문가들을 위원회에 참여시킴으로써 ‘협의회’의 위상 제고뿐만 아니라 자원봉사계가 사회운동 영역에서 점하는 **위상을 제고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위원회의 역기능도 있다. 위원회가 비상설기구로 운영되다보니 안정적인 집행이 보장되지 않아 유명무실해지기 쉽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사무국의 실무집행력의 확보로 해결해나가야 한다. 사무국은 총회(대의원대회) 및 이사회에 의결사항에 대한 책임 있는 실무집행 뿐만 아니라 위원회를 활성화시킬 책임이 있다. 위원회와 사무국이 정책연구에서 실무집행에 이르기까지 양 날개의 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유급 상근직원들로 구성된 **사무국 직원이 위원회의 간사 역할을 맡는 등 보완장치가 필요하다.**

### \*위원회 구성

대분류	각 위원회	구성	위원장	간사
위원회	정책위원회	학계(교수, 연구소 등) 정부 부처(관계 공무원) 단체(단체 정책담당, 책임자)	이사	사무국 직원
	홍보위원회	언론인(방송, 신문사 등) 마케팅전문가(기업, 단체 등) 연예인	이사	
	재정위원회	기업, 마케팅전문가, 단체 등	이사	
	특별위원회	필요시 이사회에서 설치	이사	

## ③정책 및 사업방향의 총화 - 이사회

현상적으로는 민·관 협력체계의 구축은 자원봉사 진흥을 위해 민과 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관계이지만, 활동주체의 입장에서는 결코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계의 **정통성과 대표성을 확립**하는 일이며, 자원봉사운동을 **제도화**시키고 **정책화**시키는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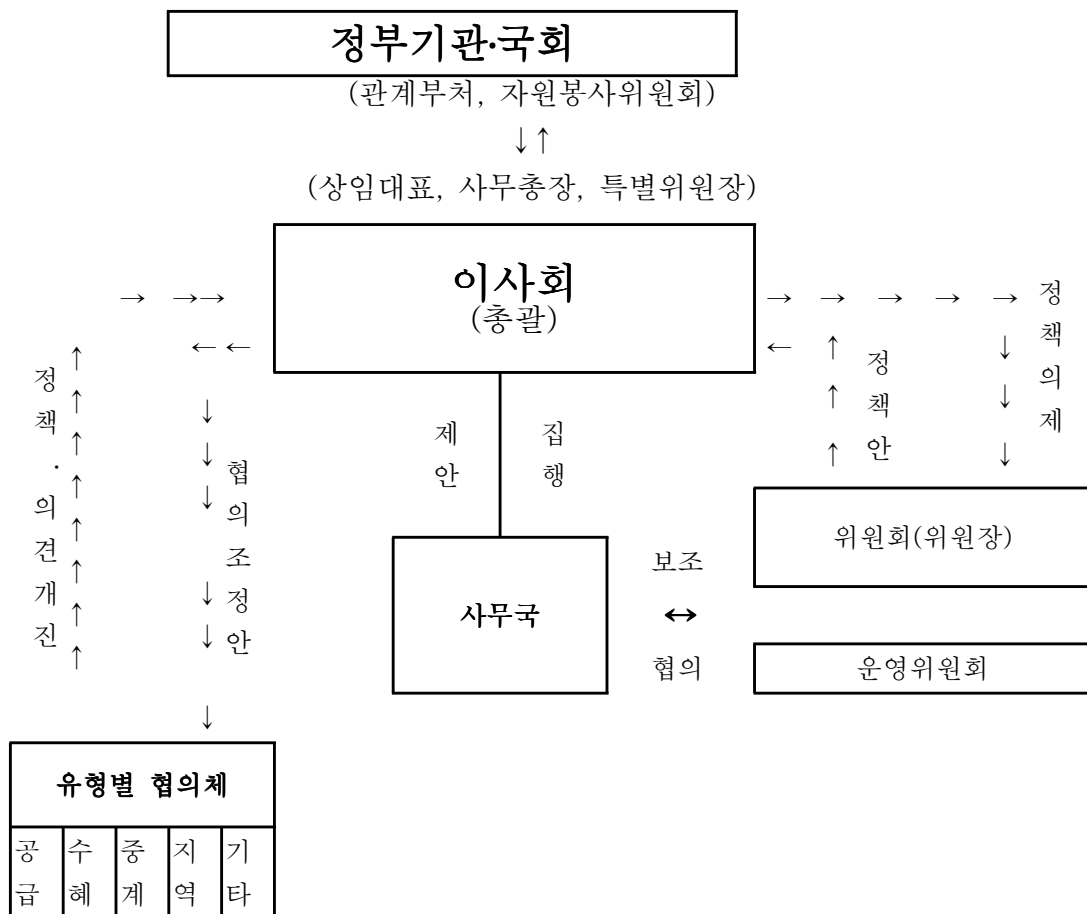
업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제도’는 한 사회의 기능을 유지시켜 주는 시스템이며, ‘정책’은 정부의 활동방향과 내용에 대한 총론이다. 따라서 자원봉사활동의 제도화와 정책화 정도는 자원봉사의 발전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될 뿐 아니라, 자원봉사계 전체의 운명과 지각변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협의회’에서 대정부 활동의 방향과 내용은 ‘이사회’에서 총괄하되, 실무집행은 이사회에 위임을 받아 사무총장 또는 특별위원회에서 관장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는 민·관 협력체계의 구축 또는 대정부 활동을 개인의 역량이나 기술적 측면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원칙적인 대정부활동을 통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총역량을 배가시키거나 집결시키는 전략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즉 ‘협의회’에 대한 예산 지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등등의 한정된 내용이나 지엽적인 문제에 얽매어 자원봉사 전체의 주요 과제를 놓칠 수 있는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다.

아무튼 대정부 활동이라는 한정된 사업과제를 놓고 보더라도, ‘협의회’의 사업의 방향을 결정하는 총괄기구로서 ‘이사회’는 핵심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이사회에 위상을 확고히 하고, 주어진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이사회 구성에 대한 합리적인 원칙과 방법들이 강구되어야 한다.

**\*대정부 활동 총괄기구(이사회)**



## 2) '협의회' 조직구성(체계 및 역할)

앞에서 언급한 '협의회' 조직구성의 원리에 기초하여 '협의회' 조직구성의 내용 및 체계에 대해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 【의결기구】

#### ①대의원 총회

- 지위 : 최고 의결 기구
- 의결사항
  - 사업계획·예산 승인
  - 정관의 제·개정
  - 임원 선임 및 해임
  - 사업집행·결산 승인
  - 법인 변경·해산
  - 기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등
- 구성 및 비율(전체 규모는 500명 ~ 1,000명)
  - 1차 유형별 협의체에 할당된 대의원(90%이상)
  - 배정 대의원수 = 5명(기본) +  $[20\text{명} \times \text{회원단체수} / 100] \times @5$
  - 각 위원회에 할당된 대의원(10% 이내)
- 의무사항 등
  - 회비 = 대의원 수 × 6만원(연회비)
  - 정기총회(창립총회) 1개월 전 회비 미납입시 자격 박탈
  - 회비 및 회의 참석 등 활동실적에 따라 대의원 수 재조정

#### ②이사회

- 지위 : 총회를 대신하는 상설 의결기구
- 의결사항
  - 총회에 부의 및 위임 사항
  - 각종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
  - 회원 가입 승인(조정) 및 위원회 설치 등
  - 기타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 등
- 구성 :
  - 1차 유형별 협의체 대표(1~2명 정도로 대의원수에 따라 조정)
  - 각 위원장<sup>6)</sup>
  - (사무총장)

5) @ 1차 협의체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 지부 조직 등 조직의 규모를 감안한 대의원 배정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는 변수이다.

6) 이사회의 전문성과 위원회와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각 위원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전문가들이 소속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의무사항 등

- 회비 = 연회비 60만원(대의원회비는 면제)
- 정기총회(창립총회) 1개월 전 회비 미납입시 자격 박탈
- 회비 및 회의 참석 등 활동실적에 따라 이사 재조정

### ③대표단

○지위 : ‘협의회’를 대내외적으로 대표하는 기구로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한 의결단위

- 의결사항 : 이사회 위임사항 및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사회 추진)
- 구성 : 5명(공급단체1, 중계단체1, 수요단체1, 위원회1, 지역1)
- 의무사항 등 : 연회비 100만원(이사회비와 대의원회비 면제) 납부 등

### 【집행 기구】

#### ①상임대표

○지위 : ‘협의회’를 대내외적으로 대표하는 자로서 협의회 운영 및 사업에 대한 총괄 책임자

○기준 : 조직의 발전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할 것 중 하나가 조직과 사람에 대한 함수관계이다. 일반적으로 조직은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의 집결체로 구성원들의 집단적 결집력과 합리적인 역할조정이 어울렸을 때 발전한다. 특히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것은 **중심인물의 지위와 역할에 따라서 조직의 운명이 좌우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협의회’ 상임대표의 선임의 문제는 ‘협의회’ 사업의 기능적 측면에서만 바라볼 문제는 아니다. 전문성과 함께 자원봉사활동의 정체성과 대표성을 대내외적으로 상징할 수 있는 인물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자원봉사활동의 독자성과 정체성을 대표할 수 있도록 전국적 규모의 사회(시민, 복지 등) 단체의 장 겸임에 대한 제한 필요.

-정부기관 및 여타의 전국적 규모의 사회단체와의 네트워크를 주도할 수 있는 **경험과 판단력, 조직역량** 정도.

-‘협의회’ 운영의 안정성과 민간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펀드(fund)조성 전략**과 추진력 정도.

-다양한 자원봉사단체(기관)으로 구성된 ‘협의회’는 자칫 내부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 따라서 객관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이사회를 이끌어 가야하며, 사업에 있어서 사무처(사무총장) 활동의 고유권한을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큰 흐름에서 조정·통제할 수 있는 **리더십** 여부.

○방법

-총회에서 선출

-상임대표의 선임 시 비전 및 역량에 대한 객관화를 위하여 공약(公約)제시 등 선출방법에 제도 마련 및 명문화.

○임기 : 3년(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②위원회

○지위 : ‘협의회’의 시책사업 및 ‘이사회’에서 결정된 특별사업에 대한 정책연구 및 활동기구

○종류

- 상설위원회 : 정책위원회, 홍보위원회, 재정위원회, 국제협력위원회 등
- 특별위원회 : 특수시책을 추진하는 한시적 위원회

○구성

- 이사회의 의결
- 해당 위원회의 활동과 연관된 전문가 또는 업무 종사자들로 10인 이내로 구성되며, 실무 간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무처의 직원으로 한다.

○권한

- 위원장은 당연직 이사
- 위원은 당연직 대의원
- 이사회에 부의할 의제(안) 상정 권한
- ‘협의회’ 용역사업 우선 추진의 권한 등

○의무 사항 등 : 연회비 12만원(대의원 회비 면제)

## ③사무처(국)

○지위 :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업을 집행하는 단위

○구성 : 사무총장, 기획정책, 조직, 홍보 등 필요한 분과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

○사무총장

- ‘협의회’ 사업의 실무를 총괄하며 상임대표의 위임을 받아 ‘협의회’를 대표하여 대외적 활동을 할 수 있음.

-선임방법 : 공개채용, 채용심사위원회 구성, 채점 기준표 등 공개성의 원칙

-임기 : 3년 단위로 계약, 평가위원회 및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 연장.

-업무권한 : 상임대표와의 업무분장을 통해 실무집행과 관련된 상당한 부분을 전결처리토록 하는 등 권한을 위임해줌.

○부서장

-사무총장의 지휘를 받아 업무분장에 따른 ‘협의회’ 실무를 집행.

-복무규정 : 소정의 복무규정에 의거함

-채용 : 채용심사위원회 구성 등 공개채용의 원칙을 갖되 사무총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최종적으로 상임대표가 결정함.

## ④운영위원회

○지위 : ‘협의회’ 사무국 실무집행에 대한 자문 및 지원기구.

○구성 : 회원단체의 중간 간부 또는 해당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실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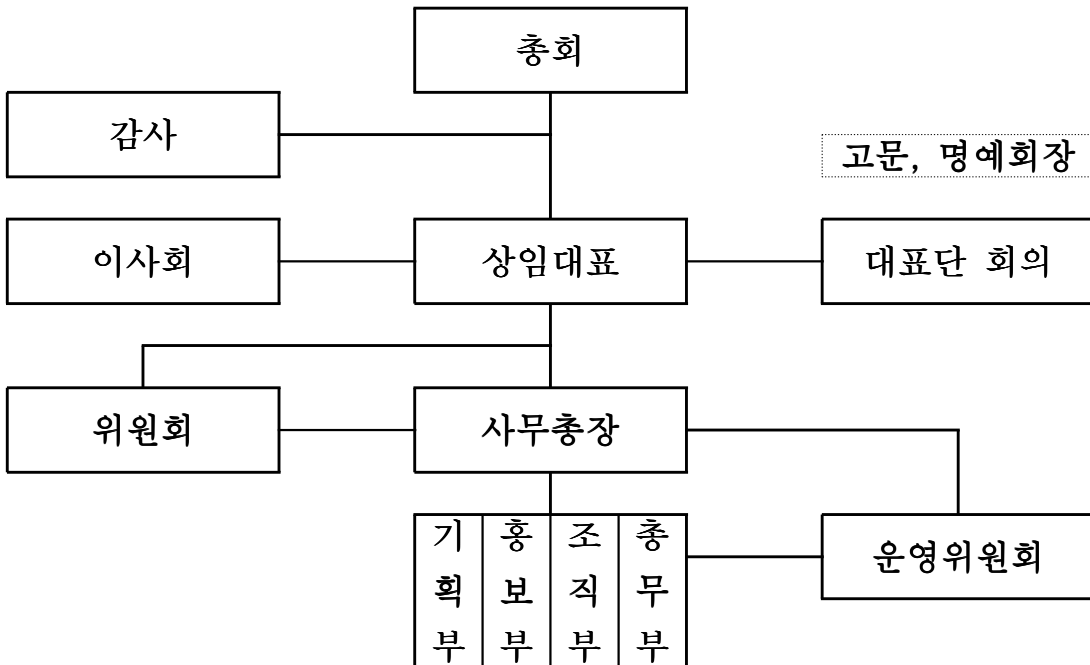
○기타 : 운영위원장은 사무총장으로 하며, 운영위원의 위촉은 회원단체의 추천을 받아 사무총장이 위촉하며 이사회에서 승인처리.



**【감사기구 - 감사】**

- 지위 : ‘협의회’ 사업, 문서, 회계에 대한 감사기구
- 권한 : 정기 감사, 긴급감사, 이사회 참관 등
- 구성 : 3명
  - 사업 감사 : 회원단체 1명(대의원급 이상)
  - 회계 감사 : 외부인사 1명(회계사, 공직출신자 등)
  - 문서 감사 : 외부인사 1명(공직경험자 등)
- 의무사항 등 :
  - 감사 : 연4회(분기별 1회) 감사를 통한 협의회 사업의 체계화에 기여
  - 특별회비납부 : 연회비 30만원

**\*‘협의회’ 조직 체계**



**3.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사업 원칙 및 방법**

‘협의회’가 창립되어 활동한지 1년 4개월을 경과하면서 우리에게 준 교훈은 바람직한 조직체계의 수립 못지않게, 조건과 실정에 맞는 사업의 원칙 및 방법이 전제되지 않으면 조직의 활동이 유명무실해질 개연성이 많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는 ‘협의회’의 조직체계 골격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과제와 함께 사업의 원칙과 방법에 대해 천착할 필요가 있다.

**1) 넓으면 약하다 - 선택과 집중**

‘넓으면 약하다’라는 말이 있다. ‘협의회’와 같은 전국의 조직체들은 ‘전천후식 활동’과 ‘문어발식 사업’에 경도되어 자기합정에 빠지기 쉽다. 즉, 전국의 조직체라는 자기 위상에 사로

잡혀 주체적 활동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당위성’을 앞세운 사업을 하다보면 내부적으로는 비대해진 조직의 유지를 위해 에너지 소모가 심해지고, 대외적으로는 조직의 정체성이 불분명해짐에 따라 회원단체와의 갈등과 충돌로 이어지는 좌충수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협의회’ 사업의 원칙수립에 있어서 제1차적으로 고려해야할 부분은 **사업의 집중력**을 높여내는 일이다. ‘협의회’에 주어진 사업들에 대한 나열식 활동은 지양하고, 조직 및 실무역량, 재정적 능력 등을 감안하여 ‘협의회’ 발전전략에 기초한 사업들을 선택하고 집중해야 한다.

## 2)공감의 네트워크, 성과의 나눔을 통한 참여

‘협의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회원단체들이 ‘협의회’를 바라보는 이중적 태도를 잘 직시하고 슬기롭게 극복하는 것이 관건이다. 일반적으로 전국조직의 회원들이 가지는 속성은 중앙조직에 대한 기대심리가 매우 높으면서도, 중앙조직의 발전에 기여할 자기역할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나 매우 소극적이다. 심지어는 중앙조직과 회원조직과의 관계를 대립관계로 설정하거나, 중앙조직을 회원단체와 무관한 소외된 조직체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협의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운영초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조직운영의 형식주의에 빠져 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우선적으로 ‘협의회’ 사업의 구상에서 계획에 이르기까지 회원단체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상시적인 노력들이 세심하게 뒷받침되어야 하며, 사업을 집행할 때는 회원단체 또는 회원단체의 중간관리자들을 사업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인내와 설득의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사업의 추진 과정 속에서 회원단체의 참여의 의의 및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의 성과를 과감하게 회원단체에게 나누어 주는 마인드**가 필요하다. ‘협의회’가 존립할 수 있는 토대는 회원단체의 활동과 참여이다. ‘협의회’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관행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때는, 회원단체들과 괴리가 발생하거나 이탈로 이어진다. 따라서 ‘협의회’가 사업을 추진할 때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단체와의 공동추진을 기본으로 하고, 사업의 성과는 회원단체로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 3)민간사회단체의 정체성과 자생성

자원봉사활동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서 나눔의 공동체를 실현하고 우리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운동이다. 전국의 자원봉사단체(기관)가 모인 ‘협의회’ 역시 이러한 자원봉사활동의 정신에서 빚겨날 수가 없다.

자원봉사활동의 자발성(자주성)의 문제는 ‘협의회’가 사업추진에 있어서 시종일관 민간시민사회단체로서의 정체성을 어떻게 견지할 것인가와 재정의 자립도를 어떻게 높여낼 것인가의 문제로 직결된다.

자원봉사진흥법(안) 제정 추진과정 중에서 ‘협의회’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 항목이 더욱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이 문제는 ‘협의회’ 존폐의 문제가 될 만큼 중대사안 이기도 하다.

따라서 **자원봉사계의 자주적 조직역량의 배가와 함께 사회적 영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협의회’가 **민간시민사회단체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해나가는 한편, 재정의**

자립도를 높여내겠다는 의지가 무엇보다도 필요 할 때다. 정부에 대한 기대심리만 높아졌을 뿐 현실적으로 어떠한 지원도, 어떠한 타개책도 없이 로비에만 의존하는 사업 작풍이 지속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협의회’ 자체의 운영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정부지원에 대한 회원단체의 기대심리만 높아져 결국은 ‘협의회’를 약화시키는 원심력으로 작용하는 부메랑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 4) ‘협의회’ 조직의 정예화

첫 번째 ‘협의회’는 본조직과 회원조직 간의 분화발전에 대한 전망과 그 연장선에서 중장기적인 사업과 단기적 프로젝트 사업들을 배치시켜야 한다. ‘협의회’의 회원단체 결합력을 질·양의 측면에서 제고시키고 ‘협의회’ 실무자들의 양적 확대와 질적 성장에 걸림이 되는 재정상의 어려움 등 내부적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역량(사람, 재정, 전문성, 대중결합력 등)의 확대재생산 구조를 창출시켜 나가야 한다. 처실국 중심체제에서 **위원회** 구조로 발전시켜 내고, 위원회 구조는 목적사업 및 회원과의 유기적 결합을 높여내는 쪽으로 나가야 한다.

두 번째로 ‘협의회’의 정예화를 위해서는 자원봉사계의 대내적 구심의 필요성은 말할 것도 없고, 대외적으로 조직의 권위와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중심적 인물을 집중적으로 양성해야 한다.

세 번째로 ‘협의회’의 정예화를 위해서는 업무장악력과 일정한 집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의결단위를 강화해야 한다. ‘협의회’ 본 조직을 강화시켜 내고 본조직의 권위와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사업을 집행할 수 있고 자원봉사 전체의 흐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역량 있는 회원단체의 유력자들을 중앙의결 단위로 포진시켜 나가야 한다.

#### 5) 회원단체와의 사업 연결(순환)고리 형성

‘협의회’가 자원봉사계의 중앙인프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생산라인’과 ‘판매망’에 대한 연관성을 잘 살려 ‘협의회’와 ‘회원조직’과의 사업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첫 번째로 생산라인의 구축이다. ‘협의회’의 위원회를 중심으로 회원단체에게 자원봉사활동의 정책 및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생산단위를 만들어야 한다.


두 번째로 상설시장과 직영체인점의 개설이다. 상설시장은 ‘협의회’와 직접적인 조직관계는 없지만 내용적 결합력을 추구해야 될 조직단체와 운동영역이다. 주민조직, 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등 자원봉사의 확장을 위해서 불가분의 관계가 단체 및 조직과의 연대성들을 확보해야 한다. ‘협의회’의 생산단위에서 만들어진 상품들이 상설시장에서 보급될 수 있도록 헌신성과 전문성을 기본으로 타 단체 및 기관들의 활동에 대한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직영체인점은 ‘협의회’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협의회’의 조직망을 따라 직접적으로 회원단체들에게 공급되는 조직라인을 말한다. 이는 중심조직과 회원조직과의 내용적 결합력에 대한 척도이기도 하다. 또한 자원봉사활동의 인적 물적 확대 재생산의 구조를 창출할 수 있는 통로이기도 하다.

## 6)사업추진에 있어서 3대 생산요소(기획, 인사, 재정)의 견지

첫 번째로 기획이다 기획은 사업의 전망과 활동내용을 뜻한다. ‘협의회’는 단위사업이 일회적인 행사로 끝나는 것을 철저히 지양해야 한다. 모든 사업이 자원봉사계 전체에서 차지하는 사업적 의의와 전망, 경로에 대한 비전 속에서 사업의 주요 목표, 집행 및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하나하나의 사업들이 회원단체들과의 사업의 연결고리 형성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가? 조직적 목표로서의 ‘협의회’의 정예화를 위해 얼마나 보탬이 되었는가? 방법론적 목표로서의 3대 생산요소의 창출이 이루어지도록 했는가? 등이 점검되는 기획들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인사다. 인사는 인적자원의 확대재생산과 사람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중장기적 비전을 말한다. ‘협의회’가 자원봉사의 확장과 자원봉사의 철학과 목표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사에 대한 중요성을 무엇보다도 각인해야 한다. 즉, 모든 사업에서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늘려가는 것이며, ‘협의회’의 현재적 조건과 역량의 한계라는 굴레에서 벗어나는 지름길이다. 이를 위해서는 활동의 전문성과 발전가능성에 대한 집단적 배려를 통해 전문적인 활동구조를 창출해야 한다. 현장 활동가들이 활동방향에 대한 총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전천후식 또는 종합형 활동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는 앞으로는 시민사회단체로서 경쟁력을 가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사람의 지위와 역할을 사무국에 한정하여 사무 정책 집행 등의 범주에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계 전체의 조직의 분화와 발전성을 염두에 둔 접근들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 재정이다 재정은 ‘협의회’의 자립재정을 실현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이다. ‘협의회’가 향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활동과 중앙인프라의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재정자립을 위한 사업들이 무엇보다도 중요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협의회’의 기본 운영비는 회원단체의 회비를 통해서 충당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 따라서 ‘협의회’ 운영에 있어서 비효율적이고 비체계적인 회계의 혁신부터 개선하면서도, 매개 사업의 추진 속에서 사업수익의 효과가 창출될 수 있는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회원회비의 납부율을 제고시키기 위한 기본 계획의 수립은 물론이고 상임대표가 직접주도하는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하여 펀드조성을 위한 다각도의 방법들이 연구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분과토론2 발제

자원봉사센터 정체성과  
혁신방안

이 성 록 <국립한국재활복지대학 교수>

# 자원봉사센터 정체성과 혁신방안

이 성 록<sup>7)</sup>

## I. 문제의 제기

최근 세계화와 정보화 그리고 지방화라는 시대적 사조에서 보다 극명하게 드러난 지구적 현상은, 소위 경제적 패러다임과 사회적 패러다임의 양립할 수 없는 모순적 대립관계의 심화로서, 이에 따라 인류사회는 유례없는 혼란을 경험하고 있다. 인류사회는 물리적으로 통합될 수 없는 대립적인 두 패러다임을 매개하는 영역으로서 자원봉사활동을 주목하고 있다(이성록, 2000). 분명한 것은 이제 자원봉사는 상보성(complementarity)의 원리에 따라 대립적인 사회적 질서의 원리들을 매개하는 미래사회의 대안으로서 자리매김 되고 있으며 따라서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전 지구적으로 시도되고 있다(이성록, 2003).

그 동안 사적 영역의 자조노력 수준에 머물러 있던 자원봉사 영역은 이제 공적 영역에서 공공재의 공동생산 주체로서 보다 체계화되고 있으며 사회적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자원봉사의 사회적 위상의 강화와 체계화를 상징하는 대표적 현상은 자원봉사센터의 등장과 역할의 확대이다. 즉 자원봉사자 개발성과 적재적소활용 및 유지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원봉사센터의 전국 시·군·구 단위에 설치한 것은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정치·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는 인간사회의 문화적 능력의 산물이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의 자원봉사센터 운용체계가 자원봉사센터 본연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냐에 대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자원봉사센터의 정체성과 전문성의 문제는 자원봉사센터의 태동과 함께 제기되어 여전히 미결과제로 남아 있다. 정체성은 존재에 관한 질문이며 전문성은 행위에 관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도대체 자원봉사센터란 어떤 조직이며 무엇을 하는 조직인가? 그나마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응으로서 전문성 문제의 해결노력은 상당부분 진행되어 왔으나 가장 근본적인 정체성에 관한 문제 제기는 사실상 부재상태였다. 최근 자원봉사진흥법 제정을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드러난 자원봉사센터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부족 현상은 매우 광범위하고 심각하였다.

우리는 이제까지 우리자신에 대한 의문과 문제제기에는 소홀하였다. 그동안 우리는 법률과 제도 및 재정적 지원의 미흡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외부환경의 열악함으로 인하여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토로함으로써 전문성 시비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기 급급한 악순환을 거듭해 왔다.

물론 수년 사이 자원봉사 영역은 현저한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는 기능적 수준에서의 발전에 집중되어 있다. 즉 자원봉사자의 양적 증대와 이에 다른 관리조정 기능은 발전되었으나, 자원봉사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원리와 시대적 가치에 대한 인식수준은 매우 초라한 실정이다. 이러한 와중에서 필자는 지도자는 물론 심지어 소위 전문가로 자처하는 사람들마저 자원봉사의 기본가치에 대한 무지를 발견할 수 있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론적 분석과 실증적 검증 없이 지각된 이미지, 소위 “들은

7) 국립한국재활복지대학 교수/ society21@hanmail.net

풍월”로 자원봉사를 논하는 그 자체는 넌 센스가 아닌가?

최근 일본에서는 자원봉사센터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의 “정비” 혹은 “혁신”을 강구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포스트모더니즘, 소비자중심주의 등 민감한 사회경제적 환경을 고려하여 특히 단순히 외적 기능의 강화만이 아닌 내적 가치의 심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본 발제자는 이러한 맥락에서 먼저 자원봉사영역에서 전문가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관리조정자들이 자원봉사의 이념과 원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을 전제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사회적 위치와 정체성을 검토하고 센터의 “정비” 혹은 “혁신”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 II. 자원봉사센터의 정체성

### 1. 자원봉사센터의 사회적 위치

현재 입법추진 되고 있는 자원봉사진흥법에서는 자원봉사센터를 “자원봉사활동을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에 의해 설립된 조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1995년 촛불재단(Points of Light Foundation)과 국제자원봉사협회(IAVE)이 공동으로 조사한 “세계자원봉사센터 편람”에서는 “지역 자원봉사센터(Local Volunteer Center)는 지역 내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장려하는 것을 주된 사명으로 삼는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에 대한 설명일 뿐 현대사회에서 자원봉사센터의 사회적 위치를 설명해 주지 못하고 있다. 즉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에 관한 정보가 집결된 활동 거점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지지하는 기구이지만, 그 사회적 위치는 매우 독특한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자원봉사센터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산물로서, 자원봉사자의 자주성을 보장하면서도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해야 하는 국가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장치이다. 즉 정부차원의 자원을 민간차원의 자원으로 변환하는 한편, 자원봉사자 개인차원의 에너지를 국가차원의 에너지로 변환하는 매개체이며, 행정적으로는 정부전달체계가 아닌 동시에 민간전달체계도 아닌 제3의 전달체계로서 사회적 위치를 갖고 있다.

따라서 민간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자원봉사단체와는 달리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일차적 지원 책임은 중앙정부와 시·도 및 시·군·구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원봉사의 이념과 가치 측면에서는 자원봉사센터는 민간이 주체가 되어 자율적 운영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기초로 민관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공동생산체제로 자리매김 되어야 할 것이다.

### 2. 자원봉사 조직에서 자원봉사센터의 위치

한편 자원봉사활동은 시대의 가치와 문제에 대응하는 그 시대 사람들의 행위양식으로서 매우 다양한 조직적 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적십자와 새마을과 같은 대형단체들도 있고 10명 미만의 구성원으로 조직된 소규모 단체들도 있다. 그렇다면 다양한 자원봉사 조직들 가운데 자원봉사센터의 위치는 무엇인가? 또한 자원봉사 영역에서는 대규모 단체들의 활동력이 자원봉사센터보다 클 수가 있다. 그렇다면 자원봉사를 수행하고 있는 대규모 단체와 자원봉사센터는 무엇이 다른가? 이러한 질문을 통하여 자원봉사영역에서 센터의 위치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필자는 자원봉사조직의 형태를 네 가지로 유형화(이성록, 2003) 하여 각각의 특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집중모델은 조직의 근본적 미션이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지지하는 것이며 훈련된 관리조정자가 배치되어 운용되는 조직이다. 이 모델은 집중도가 높은 자원봉사 전문기구로서, 일정한 관할 구역이나 분야에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전달 촉진 체계를 함축하는 것이다. 전국차원 혹은 지방차원에서 일정한 행정적인 관할구역과 제도적인 재정지원 체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기관과 행정적 유기성을 갖고 있으며, 공식화된 역할체계가 존재한다. 이 모델에서의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법률적인 명령과 기관의 규칙에 의해 그 책무성이 성문화되며, 표준화된 정책과 절차에 의해 운용된다.

둘째, 분산모델은 조직고유의 미션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부서를 설치하고 있는 유형이다. 자원봉사 담당부서는 각각 조직 고유의 미션을 성취하기 위하여 독창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설계·운용하고 있으며, 조직의 과업과 연계된 고유한 서비스의 목적과 목표에 부합되도록 각각 설계되어진다. 이 모델에서의 자원봉사활동은 법률적 명령으로부터 독립적이나, 조직 내부의 성문화된 구조적 혹은 정책적 지침에 따라 운용된다.

셋째, 혼합모델은 집중모델과 분산모델을 결합한 형태로서, 조직의 미션에 자원봉사 장려와 지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집중모델과 유사하게 관리조정자 직책을 도입하고 있지만, 그들이 자원봉사활동과 지역사회 서비스 과업에 투신하는 형태는 각양각색이다. 대체로 혼합모델에서의 관리조정자는 풀타임 과업에 대하여 파트타임 수준의 책임성을 갖고 최소한의 시간을 투입하여 과업을 수행한다. 혼합모델이 분산모델과 유사한 점은, 조직 중심의 고유 프로그램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과, 각 프로그램은 특유의 욕구에 따라 집중력 분산을 제도적으로 수용한다는 점이다. 혼합모델에서 관리조정 체계는 집중모델에 비하여 요목화가 미흡하지만, 분산모델에 비해서는 보다 높은 수준을 보여준다.

넷째, 지역사회기반모델은 일반적으로 지역사회의 공공복지시설에 대하여 자원봉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선조직 등과 같이 지역사회에 기반을 조직유형이다. 이 모델은 긴급한 서비스 욕구에 부응하여 협력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협력의 범위는 문제의 사안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되며, 개인 혹은 집단의 욕구 규명에 따라 서비스의 목적과 목표를 정하게 된다. 대체로 전반적 기능을 규정하는 조직구조를 갖고 있으며, 정부 관련부서와, 위에서 진술한 다른 모델들과 협력하는 형태를 취하기도 하며 서비스 제공기능을 확대 또는 강화하기 위하여 다른 조직과의 협력체계를 갖기도 하며, 나아가 과업수행의 동역자로서 지역사회기반 체계들과 협의체를 구성하기도 한다.

다섯째, 특별프로그램 수행모델은 자원봉사와 무관한 조직에서 하나의 특별한 시설 혹은 프로그램에 대해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설계된 유형이다. 즉 학교나 기업이 내부 구성원들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별 프로그램 혹은 시설을 설치하고 특정 자원봉사 관리조정 체계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지역 내의 시설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 3. 자원봉사센터 중 지역자원봉사센터의 위치

최근 기능과 역할에 따라 다양한 종류와 특성을 지닌 자원봉사센터들이 설치되고 있다. 여러 가지 유형의 자원봉사센터들 중에서 지역 자원봉사센터는 어떤 위치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자원봉사센터의 유형을 역할 형태에 따라 분류한다면, 중개 조정형, 송출 조정형, 수락 조정형 등 3개의 형태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중개 조정형의 자원봉사센터는, 주로 상담·정보 제공·소개 등을 통해, 자원봉사 활동 희망자와 자원봉사 모집 단체와의 만남의 장을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자원봉사센터"로 불리고 있 조직이다. 둘째, 송출 조정형의 센터란, 학교나 기업 등의 안에 설치되어 내부 구성원 중 자원봉사 희망자를 수요처에 내보내는 조정을 실시한다. 독립된 센터나 기구를 설치하는 경우는 비교적 적고, 대체로 직원이 겸무하여 조정업무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근래에는 기업이나 대학에 센터가 설치되기 시작



하는 등 점차 사회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셋째, 수용 조정형의 센터는, 자원봉사활동 처로서 인기가 높은 복지시설이나 병원 안에, 하나의 섹션으로서 자원봉사센터가 설치된 케이스이다. 여기에서는 그 시설에 있어서의 자원봉사의 수락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시설내외의 조정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자원봉사센터를 대상 분야에 따라 분류해보면 지역단위 자원봉사센터와 같이, 여러 분야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말하자면 "자원봉사의 종합상사"적인 센터가 있는 한편, 특정분야에 집중된 특화센터가 전국 각지에 탄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봉사학습」 「범죄예방」 「환경보호」 「국제교류」 등, 특정분야에 집중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센터이다. 또 재해구호나 스포츠이벤트 운영 등 필요에 따라 특정기간 일시적으로 설치되는 케이스도 있다. 이와 같이 최근에는 자원봉사 센터의 종류도 역할도 다양화 해, 자원봉사 희망자의 여러 가지 요구에 대응하고 있다.

### Ⅲ. 자원봉사센터의 혁신과 종합화

#### 1. 자원봉사센터 혁신의 배경

최근 자원봉사는 정부의 역할을 대체 혹은 보완하는 것으로서 공적영역에의 역할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자원봉사활동이, 공적 영역에 참여하면서도 정부정책에 종속되거나 경제 구조에 함몰되는 일 없이, 스스로 사회를 버팀목 발전시켜 가는 새로운 원동력으로서의 역할감당이 요구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시민의 활력이 있는 사회참여로서 NPO나 NGO 등의 활동이 중요한 사회적 조류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도, 커뮤니티의 중요성이 재인식되는 등 새로운 시민 의식이 싹트고 있다. 이러한 변화 따라 우리는 시민활동을 한층 더 조직적, 지속적인 활동으로서 성장·발전시켜, 공적 섹터도 아니고, 사적 섹터도 아니면서 공공적 영역으로 형성되는 자원봉사 섹터의 확립을 촉진해, 시민자율사회의 구축으로 연결해 가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전통적 범주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하는 것으로서 자원봉사센터의 혁신 혹은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혁신의 필요성은 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화에 근거하여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단체, 추진단체가 다양화 되는 가운데 중심적인 추진조직으로서 역할을 완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인식에 근거한다. 이러한 혁신의 준거 틀로서 필자는 “종합화”를 제시하는 바이며, 여기서 종합화는 “백화점식의 나열”이 아니라 질적 심화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먼저 센터 혁신의 대안으로서 종합화의 방안을 제시하기 전에 종합화가 요구되어 온 배경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 1) 지방분권화와 파트너십

전면적인 지방자치체의 실시로 “상하·주종”의 관계로부터 “대등·협력”의 관계로 전환되는 시대가 되었다. 주민자치의 이념은 다양한 수준 혹은 형태에서의 주민의 참여 로 구현되는 것이다. 주민의 참여를 배제하고서는 지방분권·지방자치, 혹은 분권사회를 창조할 수 없는 것이다.

현재의 우리 사회는 해방 후 정부를 수립한지 50년 이상 경과하여, 사회구조 그 자체의 근본적인 변혁이 필요한 시기에 접어들고 있다. 지방분권화는 그 개혁의 주요한 과제이고, 각 영역에서의 규제완화나 행정개혁도 그러한 맥락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동향을 시민의 측면에서 파악하면, 자원

봉사활동에 의한 주민의 공공영역 참가 참가의 축적은, 교육이나 복지, 그 외의 공공사업 등 「공공적인 영역」의 대부분을 국가에 담당하는 구조에 대하여,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나아가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는, 육아문제나 고령자의 부양문제 등을 사회문제로 부각 시켰고,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국가행정만으로는 충분한 대응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하여, 정부 측에게는 지역사회에 뿌리를 둔 다양한 조직·단체·기관 등과 제휴가 요구되고, 주민 측에게는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즉 행정과 주민과의 파트너십에 근거하여 지역사회 만들기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자치의 주체인 주민의 참여와 성숙한 시민사회 추구, 사회연대에 근거하는 지역 공동체를 구축해 나가는 중요한 요소라고 말할 수 있다. 문제는, 주민참여가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며, 더욱이 강제적으로 조정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그런 만큼,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사회적으로 지원하는 구조가 불가결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즉 자주성이 근본인 자원봉사활동에 사회적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역설적 현실은 하나의 딜레마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 2) 자주성과 지원의 딜레마

최근, 자원봉사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사회적으로 그 의의나 역할이 주목받게 되었다. 이러한 자원봉사활동 참여확대의 배경에는 개인차원에서 물질적 풍부함보다 정신적 풍부함을 추구하는 가치관의 변화, 사회적 차원에서는 행위주체로서 자기결정권에 대한 욕구의 증대, 국가적 차원에서는 공공재 생산과 공급에 있어서 정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시민참여의 필요성 등 세 차원의 강한 상호작용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자원봉사의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다. 전통적인 자원봉사활동은 개인의 가치관에 의해 동기화되었으나 이제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은 더 이상 개인적 차원만으로 동기화 되지 않는다. 구성적 성찰에 의한 자원봉사에서 합리적 선택에 의한 자원봉사로 그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동시에 개인적 차원의 욕구만이 아니라 사회적 및 국가적 차원의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목적체계를 지닌 패러다임으로 변화된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목적체계는 실천체계에 있어서의 변화를 수반한다. 근본적으로 자원봉사는 자주성을 전제한 인간행위 양식이며 나아가 타자와의 관계를 투영한 존재양식이다. 따라서 오로지 자기결정권에 의한 삶의 방식이므로 누구의 간섭이나 통제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시장이나 정부가 개입되면 자원봉사는 더 이상 자원봉사가 아니다. 예컨대 “지원”도 자원봉사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통제의 하나이므로 불가한 것이다. 최근 추진되는 자원봉사진흥법도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낡은 스킴이다. 왜 정부가 나서 자원봉사를 진흥시킨다는 것인가!

그러나 전술 한 바,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더 이상 자원봉사는 개인의 주체적인 동기만으로 충분한 활동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실천현장을 직시해 보라! 과거와는 달리 자원봉사활동에도 전문성과 지속성 등 사회적 책무성이 요구되고 있으나 이에 상응하는 지원체계가 없다는 문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활동거점인 사무소도 없고, 활동자금도 부족하며, 사회적 인지도 없이 임의단체로서 활동하고 있다는 상황 때문에, 결국 활동하면 할수록 개인의 부담이 무거워져, 활동을 계속할 수가 없다고 한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목적체계에 따른 실천체계의 변화, 특히 지원체계가 절실히 필요해 진 것이다. 바로 여기에 자원봉사의 딜레마가 있다.

누구나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동시에 자원봉사는 전적으로 자주성을 전제한다. 그러나 활성화는 사회적 지원체계를 요구한다. 자주성과 지원체계의 모순이 오늘 우리들의 딜레마이다. 그러면 자원봉사자의 자주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지지할 방안은 없는가?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장치가 바로 자원봉사센터이다. 시민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사회적 및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원봉사센터의 설치가 요구되고,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및 국가적 목표를 반영한 종합적 체계로서 자원봉사센터의 정비와 혁신이 요구된다.

### 3) 소비자중심의 제도·정책으로 변화

이제 우리 사회는 각 분야에서 공급자 중심의 체계에서 소비자 중심의 체계로 혁신이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과 제도뿐만 아니라 시민영역에서도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개혁의 기본적인 방향은 사회복지의 영역에 있어서의 시장원리의 도입·강화와 이용자의 자기결정, 자기책임 원칙의 확대에 향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환언하면, 사회복지의 이용자를 보호의 수동적인 객체로부터, 서비스를 이용·계약하는 주체로 전환을 꾀한 것이라도 있다. 그 계약의 전제로서는, 스스로 상황 판단해, 서비스의 종류나 내용을 선택해, 그 이용을 결정하는 주체로서의 자기책임에 근거하는 이용자상, 혹은 소비자상이 있다. 분명히, 지금까지의 사회복지의 이용자가 보호대상으로 자리매김 되어 온 것로부터 서비스 이용주체로서 전환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제도와 체계들이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여 전환해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지방분권화에 따라, 지역실상에 부응한 사회복지 시책의 추진이 가능해지면서, 지방자치체의 책임은 더욱 더 중대해 진다. 동시에, 이에 따른 비용부담의 증가는 지방자치체의 경쟁력에 다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지역 주민의 참여에 근거하는 공동·협동적인 민간복지 활동이 불가결해 진다. 만일 지역에서의 주민참여에 의한 공동·협동의 구조가 없으면, 주민의 삶의 질 증진은 물론 지방자치체의 경쟁력도 유효하게 기능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면, 향후 주민에 의한 활동 범위를 한정하지 않는 자원봉사 활동에 가세해, 소지역 네트워크 활동 등의 일정한 지역 내에서의 자원봉사활동의 중요성이 높아진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 만큼, 주민이 보다 한층 참가하기 쉬운 상황이나 환경을 정비해 나가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센터의 활동과 지역조직화 활동과의 기능적인 종합화가 필요하고, 그러한 질적 심화의 관점으로부터도 센터의 종합화 과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 2. 종합화의 기본비전

필자는 외국의 사례 특히 현재 일본에서 추진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의 정비 혹은 혁신 방안들을 참조하여, 자원봉사센터의 종합화 추진을 방안으로서 다음 4가지를 기본비전으로 제안한다. 특히, 4대 기본 비전에서 제시하는 “범주 확대”와 “질적 심화”는 자원봉사센터 종합화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개념인 동시에 종합화의 특징이 되기도 한다.

### 1) 생활을 기점으로 한 새로운 전개: 범주 확대에 의한 종합화

전통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은 그 대상 영역으로 복지를 중심 삼아 왔다. 최근 자원봉사활동의 영역은 시민생활의 충실을 배경으로 하여 환경, 문화, 교육 영역 등 광범위 하게 확대되고 있다. 자원봉사센터도 당연 그 대상의 영역을 확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원봉사센터의 종합화를 향한 기본비전의 지주의 하나는, “범주 확대”이다. 이것은 종합화 에 수반해 수행분야를 다변화 하는 것, 즉 자원봉사분야를 복지를 기점으로 하면서도 광범위하게 확대하는 것을 의미 한다.

자원봉사활동 및 NPO 활동의 분야의 확대와 거기에 따르는 활동경계의 자유화에 의해, 필연적으로 자원봉사센터가 지원해야 할 자원봉사 분야도 넓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다. 물론 이미 많은 센터들이 광범위한 영역으로 지평을 넓혀 가고 있지만 여전히 활동분야 마다 단락 지어지고 특정 분야로 한정되었다. 혹은 특화된 지원은, 자원봉사·NPO 활동의 현상에 맞지 않게 되어 자원봉사활동

의 본질인 자유롭고 활발한 활동을 방해할 수도 있다.

이러한 “범주 확대”는 자원봉사센터의 종합화에 요구되는 기본 요소이다. 그러나 자원봉사센터의 대상영역을 다변화하는 범주 확대가 단지 분야의 확대를 무조건적으로 추천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범주 확대의 기본전제는 특히 이슈중심의 활동에서 생활중심의 활동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관점으로, 주민의 일상생활을 기점으로 하여 활동분야를 확대해 가는 것이다. 즉 “종합화”라고 하는 이름 아래, 단지 자원봉사활동 지원의 “담당 범위”를 넓히는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활동의 실질적 효과증진을 기축으로 하여, 센터가 지원하는 자원봉사활동의 분야를 펼쳐 간다고 하는 발상으로 이것은 종합화에 있어서의 지극히 중요한 기본 비전의 하나가 된다. 동시에 그동안 자원봉사활동 지원으로 구축해 온 노하우를 다른 분야에 제공하기 위해서도, “범주 확대”라는 대처는 자원봉사센터의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다.

## 2) 지역사회 조직과 연계성 지원: 질적 심화에 의한 종합화

자원봉사센터의 종합화를 향한 기본 비전의 또 하나의 지주는 “질적 심화”이다. “범주 확대”가 일상생활 지원의 핵으로서 수평적 방향으로 전개하는 것이라면, “질적 심화”란 수직적 방향으로 전개하는 것이다. 범주 확대와 질적 심화는, 표면적으로 보자면 일견 모순 된 방향성이 비치지만, 종합화란 단순한 분야 확대뿐만 아니라, 그것을 질적으로 심화시켜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

민관파트너십에 의한 공공재의 공동생산이라는 새로운 조류 아래, 자원봉사자의 노력이 개인적 차원의 목표뿐만 아니라 사회적 및 국가적 차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인중심의 활동지원에서 단체중심의 활동지원으로 기능적 중심축을 전환하여 국가와 시민사회를 매개하는 사회적 장치로서 그 기능을 심화해야 할 것이다. 물론 질적 심화를 추구함은 자원봉사자의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하여 자원봉사활동 확대에 따른 사회적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예방하는 것이 핵심적 요소이지만, 개개인의 역량을 지속가능한 사회적 역량으로 심화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을 중심으로 소그룹의 조직화가 요구된다.

따라서 지역사회에 근거한 풀뿌리 조직의 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은 지극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 특히,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의 효과성을 모색할 때에, 소지역 단위의 풀뿌리 조직의 연계는 자원봉사활동의 성과를 평가하는 본질적 테마가 된다. 지역을 기반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은, 소지역 주민활동이나 소지역 네트워크 활동, 그리고 지역 주민의 지역에 있어서의 자립 생활과 깊은 관련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면 실질적 효과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자원봉사활동은 거주지 중심으로 전개하는 것이 질적인 심화를 보다 가능하게 할 것이다. 생활중심의 자원봉사활동을 하지 않는 자원봉사자들의 경우 지역사회와 괴리감을 갖게 되고 있는 현상을 드러내고 있다. 광역단위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경우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관여하지 못함으로써 지역사회 주체로서 귀속감과 친밀감을 형성하지 못하고 지역사회 변화의 성취감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자원봉사활동은 인간성 회복이라는 개인적 차원의 가치실현만으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성의 회복이라는 사회적 과제를 포괄하고 있다. 즉 개인적 가치실현과 함께 자신이 사는 지역이나 지역주민에 관심을 갖고 지역사회와 융합되는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자원봉사센터는 지역 특성에 근거하여 생활중심의 자원봉사활동이 가능해 지도록 지역조직화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특히 자원봉사센터의 종합화를 위해서는 생활권 단위의 자원봉사 거점 확보와 사회복지기관, 주민자치센터, 종교기관과의 제휴와 후방지원이 필수적 요소가 될 것이다.

## 3) 지역특성에 근거한 종합화 - 제휴·연대를 위한 중추 기관

앞에서 “범주 확대”와 “질적 심화”라고 하는 요소로부터 자원봉사센터의 종합화의 특징을 설명했지만, 여기에서는 지역특성에 근거한 자원봉사센터의 종합화를 파악하기로 한다. 자원봉사센터의 종합화의 핵심적 요소는 다른 자원봉사 추진 기구와의 제휴·연대이다. 지역사회에는 많은 사회단체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하거나 지원하고 있으며, 뛰어난 실적을 남겨 폭넓게 신뢰를 얻고 있는 단체·조직도 적지 않다. 모든 분야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센터에 요구되는 종합화에는, 이미 실적이 있는 단체·조직과 유기적인 제휴·연대를 도모하고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요구 된다. 여기에는 광범위한 정보수집과 질 높은 정보제공은 물론 더 나아가 센터가 다양한 단체·조직의 인터그룹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요구된다.

#### 4) 시민활동의 활성화를 향한 지원-NPO 인큐베이터로서의 역할

자원봉사센터 종합화를 위한 기본비전의 마지막 요소는 NPO 인큐베이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구조화하는 것이다. 복잡·다양화되고 계속 증가하는 사회적 문제와 욕구에 대하여 기존의 NPO만으로 대응하는 것은 역부족이므로, 이에 대응하는 새로운 NPO의 조직화가 불가결하다. 따라서 센터에서는 자체적으로 NPO의 인큐베이터 기능을 갖고 NPO의 육성·발전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과제로서 다음 5가지를 제시한다.

##### Ⅰ지역사회 NPO의 새로운 공공성 창출을 지원

본격적인 자원봉사영역의 형성을 위하여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의 지평을 넓히고 있는 주민운동의 공공성 창출을 위한 기반을 지원함과 동시에, 폭넓은 분야에서 다채로운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지역사회 풀뿌리 조직(Community Based Organization: CBO)을 비롯한 각종 NPO가, 자주성과 창조성을 살리면서 발전·자립하는 것을 촉진해야 한다.

특히 지역사회 NPO가 기업, 행정과의 파트너십의 아래에서, 공공성을 창출하는 새로운 담당자가 되는 것이 요구되는 바, 센터는, NPO와 행정과의 매개조직으로서 사회·공공 서비스의 기획 공모, 행정으로부터 아웃소싱(outsourcing) 되는 사회·공공 서비스의 소개 등을 통해서, NPO가 각각의 특성을 살린 사회·공공 서비스 사업에의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ⅡNPO 활동을 지원하는 인재 만들기

먼저 NPO 활동을 지원할 관리조정의 양성과 배치이다. 전문직으로서의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의 책무는 더욱 더 커지고 있다. 따라서 중개형 코디네이터로서 센터직원과 수락형 코디네이터로서의 시설 직원의 연수가 필요하다. 또 코디네이터의 지도자 양성도 중요해 진다. 동시에 NPO를 이끌어 나갈 지도자 육성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개개의 NPO의 활동내용에 격차가 있어, 운영의 원활화와 사업을 안정적으로 계속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NPO의 조직운영과 사업수행에 매니지먼트 능력이 요구되므로 매니지먼트 능력을 갖춘 인재의 육성을 도모해야 한다.

##### Ⅲ다양한 네트워크 만들기

NPO의 대다수는, 조직적으로 각각 다양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구 등과 협력체의 확보와 함께 개별적 교류나 정보 교환을 강하게 요구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면이 있으며, 역량부족으로 행정이나 기업과의 제휴도 충분히 모색할 수도 없었다. 따라서 자원봉사센터는 공유해야 할 정보의 유통이나, 필요한 정보의 교환, 각 섹터의 요구, 자원의 연계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NPO 간 네트워크 지원, 공적·사적·자원봉사 영역 간의 인적 네트워크, 정보유통 네트워크 등 다양한 네트워크의 구

축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 ④NPO를 지지하는 환경 만들기

자원봉사활동이 확대되면서 서비스의 질적 문제가 제기되고 일정한 수준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다양한 활동에서 질적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전문적, 체계적 지식 등의 축적이 요구되고 있다. 거기서, 실제 활동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지식 등을 수집·축적하면서, 앞으로의 시민참여형 사회에서 NPO 등이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를 위한 연구나 정책, 제언 등에 임하는 것과 동시에, 조직의 담당자 만들거나 네트워크 구축을 진행시키기 위한 방법개발 등을 실시해 간다.

현재 상태로서는, 세제의 우대조치나 비영리 법인제도의 재검토 등, 지역사회NPO의 활동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제도적인 환경의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자금부족 등의 이유로부터, 사람·정보가 모이는 거점이 확보 되지 못함 등에서 자원봉사 활동의 유효성을 넓게 어필 해, 사회시스템을 포함한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및 환경개선을 위한 사정 등 다각적인 노력을 수행해야 한다.

### ⑤기업 및 노조 자원봉사활동 지원하기

마지막으로 기업·노조에의 지원을 들 수 있다. 근로자의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가의욕은 해마다 고조를 보이고 있으며, 사회에 공헌하는 활동으로서 적극적으로 사원의 참여를 지원하는 기업이나, 자원봉사 활동에 임하는 노동조합이 증가하고 있다. 사회 전체에 차지하는 근로자의 비율을 생각했을 경우, 기업이나 노동조합에의 지원은, 자원봉사센터의 중요한 과제이다.

## IV. 마치는 말

세계는 변화되고 있다. 19세기는 자유의 세계를, 20세기는 평등의 세계를 실험하면서 인류사회는 그 어느 것도 인간의 행복을 담보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이제 상보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 소비자중심주의 사조는 다양성의 가치를 지향하고 공공재 체계 역시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의 체계를 구축하는 변혁을 도모하고 있다. 동시에 시민의 참여욕구 증대와 신자유주의 정책은 경제와 복지를 동시에 충족하려는 방안으로서 공동생산과 거버넌스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등장시켰다.

이러한 시대의 변혁은 자원봉사활동 영역에도 여파를 미쳤고, 이제 자원봉사는 개인적 가치추구 차원에서 탈피하여, 사회통합이라는 사회적 차원과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국가적 차원의 책무를 지니게 되었다. 더 이상 사적 영역에서 개인차원의 활동으로는 완결될 수 없게 된 것이다. 공적 영역으로 확대된 자원봉사는 이제 중요한 사회적 안전장치로서 자리매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원봉사는 자주성을 근본으로 삼고 있지만 국가는 자주성을 침범하지 않는 방법으로 체계화해야 할 책무를 갖는 딜레마가 제기된다.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적 장치가 자원봉사센터라는 조직이다. 자원봉사조직은 자원봉사의 근본이념을 지키고 실현해내면서 국가적 에너지를 시민사회 에너지로 변화시키고 동시에 시민사회의 에너지를 국가적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매개체개로서 사회적 기능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제까지 개인차원의 수준에 머물던 자원봉사센터의 사회적 기능을 국가적 차원으로 확대하는 기능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필자는 이를 “종합화”라는 용어로 설명하였다. 종합화는 단순히 범주의 확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

라 질적 심화를 수반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종합화에 부응하는 관리조정자들의 역할을 필자는 “공감의 매니지먼트”로 설명하였다. 이제 세계변화의 동향을 민감하게 분석하여 감안할 때, 시대의 변화를 선도하는 사회적 매개체로서 자원봉사센터는 정비되고 혁신되어야 한다. 언제까지 박제화 된 지식에서 머물 것이며, 언제까지 “카더라” 수준의 지식에 안주할 것인가! 분명히 하라! 그리고 새롭게 하라!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요 생존방식이다.







분과토론 3 발제

초 · 중 · 고 대학의  
자원봉사

이 성 철 <남서울대학교 교수>

# 초·중·고 대학의 자원봉사

이성철<sup>8)</sup>

## 1. 5.13 교육개혁과 사회봉사

청소년 비행문제가 사회적인 쟁점으로 부각될 때마다 인성교육의 필요성이 제기 되곤 한다. 중학교 교사 10명 가운데 5명은 요즘 학생들에게 인성교육이 가장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인성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난 '95년 5월 31일 발표된 제 1차 교육개혁 방안에서는 초·중·고교에서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개혁위원회가 내놓은 초·중·고교의 학사 운영 개혁방안이나 교육과정 개편 그리고 대학입시제도개선 등도 인성교육 강화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학교 급별에 따른 인성교육 실시

학교 급별로 학생의 발달수준에 맞도록 도덕성 사회성 정서 등 체계화된 인성 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정규교과 전체에 포함하여 실시한다.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예절 기초질서 (교통질서) 공동체 의식 교육 등을 강화하고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까지는 민주시민 교육(인간존중, 공공법질서, 합리적 의사결정 등)을 강화하며 고등학교에서는 세계시민 교육 (타문화의 올바른 이해 평화교육 외국여행 에티켓 등)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 (2) 인성교육 방법의 개선

지식 중심의 도덕윤리교육에서 벗어나 대화토론 상담 사회봉사 등의 실천적 활동을 통해 민주시민윤리를 내면화하고 전교과목에 걸쳐 도덕 윤리교육이 구현되도록 함으로써 학교를 도덕적 분위기로 전환시킨다. 새로운 정보화 세계화 시대에 걸 맞는 정보윤리와 환경윤리 그리고 평화애호와 인류애의 정신에 관한 내용을 강화한다.

### (3) 청소년 수련활동과 봉사활동의 생활기록부에의 반영 강화

야영장 및 수련원 시설을 확충하여 청소년의 단체 수련활동을 활성화하고 집단적 놀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협동적 문제해결을 통한 다양한 실천학습경험을 제공한다. 방학 중 몇 개학년의 집단 야영활동을 실시하여 공동체의식 및 집단적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킨다. 청소년 개인 또는 단체 수련활동과 학내 외 자원봉사활동의 내용과 참가기간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 관리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상급학교 진학 시 반영되도록 한다.

8) 남서울대학교 교수/교무처장

#### **(4)유아교육에 있어서 인성교육 강화**

유아의 기본 생활습관을 길러주기 위한 예절, 질서, 청결 등 실천위주 교육을 의무화하고 가정교육과의 연계 속에서 인성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올바른 자녀교육 방법에 대한 학부모 교육을 강화한다. 그리고 어린이집 놀이 방 등 보육기관의 유아교육 기능을 활성화하여 유희 여성인력의 활용을 증대시킨다. 유아의 발달 수준을 고려한 다양한 유아 교육 자료 및 교구를 개발하여 유치원과 보육 기관에 보급한다.

#### **(5)가정교육과의 연계 강화**

인성교육은 학교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가정교육과의 연계 속에서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각종 사회단체 기업체 등의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에서 부모역할 훈련 자녀 인성지도 자녀의 학교생활이해 교육정보 및 상담 등에 관한 내용을 강화하고 언론을 통하여 인성교육과 관련하여 가정교육의 중요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한다. 특히 교육방송, CATV 등은 체계적인 부모 교육 가정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도록 한다.

#### **(6)매스컴의 교육적 기능 강화**

청소년 정서함양 프로그램 제작을 권장하며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비행(흡연, 약물남용 등)예방용 프로그램 제작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청소년의 인성교육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매스컴의 음란성, 폭력성, 범죄성 등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현재 인쇄 및 영상매체(만화 잡지 비디오 등), 게임기, PC통신 등의 음란성과 폭력성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청소년에게 폭력과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각종 유해매체로부터 청소년의 보호가 절실하다 청소년에게 음란성, 폭력성, 범죄성을 자극하는 각종 유해매체를 생산 유통하여 얻은 이익을 환수 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한다.

## **2. 봉사활동 교육의 목적**

### **(1) 사회성 증진**

중·고등학생들은 과도한 입시교육에 따라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사회와의 상호작용경험이 결핍되어 있다. 이러한 학생들을 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게 함으로써 민주사회 시민의 기본소양을 갖추게 하는데 있다.

### **(2) 지도성 개발**

중·고등학생들은 개인 위주의 교육을 받고 있어, 봉사활동을 통하여 집단경험을 터득하게 하고 이러한 집단 경험과정에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습득과 함께 지도성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대학에 들어오는 학생들에게는 이러한 지도성이 필요하다. 우리사회에서 대학생이 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혜택을 받은 계층으로 이 혜택에 대한 사회적 보상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를 이끌고 나아갈 책임이 있다.

### (3) 헌신적인 실천

중·고등학생들을 이기적인 삶으로부터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습관을 체득시켜주는데 있다. 중·고등학생들에게는 이러한 헌신적인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성인이 되었을 때 헌신적인 실천을 할 수 있게 하는 기본 소양을 갖추게 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세 가지 봉사활동의 목적을 중·고등학생들에게 똑같은 비중으로 요구할 수는 없다. 중·고등학생들에게는 일차적으로 사회성 증진이 요구된다. 중·고등학교 교육의 목적 역시 민주 시민교육에 있음으로 사회성 증진은 중·고등학생들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덕목이다. 특히 고등학교 시절에 학습된 지도성 개발은 대학에 들어와서 더욱 깊이를 더하여 사회적 지도력을 형성 시키는데 기본이 된다.

헌신적 실천은 모든 중·고등학생들에게 요구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 봉사활동의 목적이 일반적으로 자발성과 헌신성에 있기는 하나 봉사활동이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관점에서 볼 때에는 모든 중·고등학생들에게 헌신적인 실천만을 요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 3. 초·중등교육기관의 사회봉사와 인성교육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 진학 시에 봉사활동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였다. 서울시 교육청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봉사활동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 '96년도 중학교 신입생부터 봉사활동 실적을 평가해 '98학년도 이후 고교 입시에 총점의 8%를 반영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 대부분의 중학교는 학교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과 개인 봉사활동으로 구분해 시행하고 있다. 지방의 경우도 각 교육청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역시 고교입시에 반영하고 있다.

물론 적절한 봉사활동 프로그램 부재로 시간 때우기 식의 봉사활동이 이루어지기도 했고 봉사활동의 참 의미를 되새기기보다 '점수 따기 용 억지 봉사'에 그치는 경우도 적지 않아 보완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또한 봉사활동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 학교 교사들은 제대로 프로그램을 마련하지 못해 손쉬운 학교주변 청소나 자연보호 부문에 봉사활동이 치중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양로원 고아원 장애인 시설 등 사회복지기관을 대상으로 한 봉사활동은 학교 수에 비해 복지기관이 부족한데다가 중학생의 봉사활동을 기피하는 경향을 보여 학교에 따라서는 봉사 대상기관 선정에 애를 먹기도 하는 것 같다. 또한 교과목 위주인 대학입시에서 인성교육을 반영하겠다고 도입된 봉사활동 점수제가 사회의 인식 부족과 수용능력의 한계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일부대학에서는 고등학교 재학시절 봉사관련부문의 수상자에게는 총점의 1% (약 8점)에 해당하는 가산점을 주

고 있으나 이것 역시 여전히 재학 시 수상자 선발의 공정성이 숙제로 남아있다. 봉사활동 기회제공에 익숙하지 못한 일선 기업과 관청,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제도적 보완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정책당국, 일하는 보람 대신 점수 따기에만 급급한 학생들에 대한 비판도 없지 않다. 이러한 봉사활동의 문제점으로

- (1)교과와 전혀 연관성 없이 자원봉사가 추진되고 있다는 점
- (2)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 기관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부재
- (3)자원봉사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기관을 찾아가 장애인을 돌보거나 노인들의 말벗이 돼 주는 학생, 우체국 동사무소 등 공공기관의 바쁜 일손을 덜어주는 학생, 유원지나 동네 주변에서 청소하는 학생 등 그 동안 중등학교 학생들의 훈훈한 자원봉사 활동이 일선 교육현장에서 현실로 나타나 인간교육 중심의 교육활동이 강화되고 있는 것은 발전하는 우리사회의 일면이 아닐 수 없다.

## 4. 대학의 자원봉사

### (1) 대학자원봉사의 의의

대학은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필요한 학문을 지도·연구하며 인격을 도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대학교육의 이념과 기능을 실현하고 수행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강의와 실험실습의 지도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원봉사활동을 들 수 있다. 대학의 자원봉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그 의의를 가진다.

첫째, 전문적인 전공 지식을 가진 젊은 지성인들이 지역사회를 위해 사회적인 자양을 공급할 수 있는 통로를 설치한다는 측면에서 우선 제1차적 의의를 갖는다.

둘째, 대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통하여 자기완성의 학습기회를 스스로 만든다는 측면에서 제2차 적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셋째, 대학생들이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실질적인 과제에 접근하여 지역사회 주민들과 더불어 발전적으로 공통점을 찾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제3차적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주민 의식의 사회통합 가능성과 주민적 자아성을 정립한다는 자신감과 주체성을 고양해 나가는 데 크게 이바지할 수 있게 하는 중요 요소는 바로 이러한 공감의식인 것이다.

또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교육적 효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첫째, 자원봉사활동은 학생들로 하여금 타인과 협력하고 인간관계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자기발전과 성숙에 기반이 되는 사회성을 기르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다.

둘째, 취미 향상을 도모하고 여가를 보람있게 보낼 수가 있다.

셋째, 자신의 적성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새로운 기술을 학습할 수 있게 하고 이미 가진 기술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

넷째, 신체적·정신적·정서적 건강을 지닌 전인적인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한다.

다섯째, 자신감을 가지게 하고 잠재적인 지도력을 계발하여 학습경험을 보다 풍부하게

한다.

여섯째, 민주주의 사회에 기초가 되는 민주주의 정신을 함양하여, 끝으로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유익한 행위의 만족한 체험을 통해서 사회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불건전한 일탈 행동을 예방할 수 있다.

## (2) 대학의 자원봉사 현황

우리나라 대학의 자원봉사활동이 본격화된 시기는 1990년대 초이다. 1990년대 중반 우리나라 일부 대학에서부터 시작된(사회복지학과 제외) 대학들의 봉사학습(커리큘럼과 자원봉사의 연계) 시스템 도입은 급격하게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1994년 중앙일보의 자원봉사 캠페인을 시작으로 한양대가 국내 대학 최초로 자원봉사 교양필수 과목을 채택하였으며(1994.7) 이후 동덕여대의 자원봉사 교양 필수 채택, 건국대의 교내 자원봉사은행 신설, 남서울대와 성균관대, 한동대의 사회봉사 인증제 도입 등 대학에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또한 대학별 사회봉사단의 출범과 사회봉사센터의 설립은 대학 자원봉사의 발전을 가져오는데 일익을 담당하였다.

특히, 대학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상호연합 및 교류증진을 위해서 1996년 전국대학총장을 중심으로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Korea University Council for Social Service)를 조직하게 되었다. 이는 미국의 대학자원봉사연합협의회와 비슷한 성격으로 출발하였다.

대사협의 역할은 대학생 자원봉사활동 육성발전과 대학 교육과정과 자원봉사 연계에 관한 연구, 대학의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연구지원, 국내·외 자원봉사 관련기관과의 교류 및 제휴, 대학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 보급, 기타 회원 대학 상호간의 협의 조정 등으로 정부와 정책연계·지원, 기업과 봉사현장 연계·지원, 봉사기관과 봉사처 선정·봉사 연계를 유도하여 상호간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2004년 10월 현재, 4년제 대학(120개교)와 전문대학(61개교)을 포함하여 총 181개 대학이 회원대학으로 참여하고 있다. 대사협의 활동은 크게 연구 개발 및 교과목 개발, 대학생 해외봉사단 파견, 대학과 초·중등학교의 연계 봉사활동 관장, 봉사활동 프로그램 공모 및 개발 등 다양한 영역에서 대학 자원봉사활동에 공헌을 하고 있다.

## (3) 대학의 봉사학습(Service-Learning)현황

자원봉사 활동이 대학 교육과정과 접목되어 교육의 한 영역이 되고 있는 것은 대학 기능의 사회적 확충으로서 전통적인 상아탑적 대학교육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다. 봉사학습은 「탈 캠퍼스적」 사고의 일환으로서 단순한 지식 전달 교육에서 학습지지 교육으로의 답을 찾게 된다는 점에서 학문적·사회적 그리고 심리적으로 유용한 결과를 가져온다.

1990년대 중반 우리나라 일부 대학에서부터 시작된(사회복지학과 제외) 우리나라 대학들의 봉사학습(커리큘럼과 사회봉사의 연계) 시스템 도입은 급격하게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정확한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대사협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전국 대학의 봉사학습 현황을 조사·분석하였다. 전국 180개 대학 및 156개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학은 84개 대학(46%)이, 전문대학은 42개 대학(27%)이 사회봉사 및 관련 교과목을 개설하

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해 조사(전문대 제외)한 28개 대학(17%) 개설에 비하여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미국 Campus Compact 회원 대학의 87%가 봉사 학습 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실태와 비교하면 아직도 대단히 미흡한 실정이다.

## 5. 대학과 초·중·고등학교 봉사활동연계방안

### (1) 목적

대학의 사회봉사활동 일환으로 지역주민에게 대학을 개방하여 교육지원봉사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실직가정 및 저소득층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고자함.

### (2) 프로그램구성

가. 대상지역: 대학소재지 또는 인근지역

나. 대상자: 실직자 또는 저소득층 초·중·고교생

다. 자원봉사교육담당자

·대학교수, 대학원생, 학부생

·실직자중 전문 인력자

·교육전문직 정년퇴직자

라. 교육분과(교과)

·컴퓨터: DOS, Windows, Internet 등

·영어: 문법, 독해, 회화, 작문

·수학: 초등, 중등, 고교반(문과반, 이과반)

·스포츠: 농구, 축구교실

·예능: 음악, 미술, 교실

·기타: 문학, 언어 등

마. 교육장소: 대학 캠퍼스 내, 대학지역 초·중·고교, 복지관, 공공시설등

### (3) 추진계획

가. 전문가로 운영위원회 구성

나. 대학별(지역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개발

다. 세부프로그램조사 및 지원방안강구

### (4) 프로그램사례

가. 학학 협동 자원봉사프로그램: 호남대학교 봉사단

나. 열린 대학 교육봉사

[표 1] 대학과 중·고등학교와의 파트너십 형성의 예

형태	설명	중요요소	예
협력	대학과 중고교사이의 정보교환	*정보공유 *최소한의 상호작용 *역할분담 *봉사의 중심설정(대학 또는 중고교 어느 한쪽)	*대학은 중고교 봉사담당교사와 봉사활동의 수요에 관한 정기적인 문의 *전담교사는 수요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지 여부확인, 프로그램 기획 시 아이디어 제공받음
조정	대학과 중고교가 연합하여 봉사프로그램기획	*공동프로그램기획 *정기적인 만남 *프로그램의 지속여부 및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여부결정	대학의 자원봉사 담당자, 봉사학생, 중고교의 자원봉사담당교사와 정기적인 모임을 통한 프로그램개발
협동	대학과 중고교는 지도력배양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투여하며 봉사학습을 위한 공식적인 파트너로서 각자의 주체성을 가지고 공유하는 가운데 새로운 구조형성	*운영위원회 또는 조정위원회를 조직하여 리더십 발휘 *기획과 의사소통에 관한 종합대책 수립 *상호역할, 책임, 노력투여에 관한 공식적인 합의 *프로그램수행을 위한 기금마련	*관련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전체의 연계망형성 *관련학교들의 물적, 인적자원공동관리 *파트너십을 이룬 학교들의 정부 또는 민간단체에의 지원금신청서 제출

[표 2] 청소년프로그램 분류

목 표	체 계	서 비 스	프 로 그 램
자립기능향상 (직접대인 서비스)	심리적지지	상 담	청소년 또래상담 비행청소년 상담지도
		심리적 자립	소년소녀가장돕기 불우청소년 결연
	사회성증진	교육지원	시설청소년 컴퓨터 지도 청소년에게 컴퓨터 및 자원봉사 전산망 활용방법 가르치기 청소년 자원봉사자를 위한 교육
		여가선용	연극지도 청소년 야영지도 풍물놀이지도
		사회활동지원	농촌활동 지도



목 표	체 계	서 비 스	프 로 그 램
사회적지지 (간접서비스)	시설지원	업무보조	청소년단체·시설 업무보조 청소년 숙박시설 업무보조
		초청방문	사회복지시설 방문봉사
	사회환경조성	조사활동	청소년 유해 문화환경 조사·감시 청소년 유해환경 조사
		정보제공	자원봉사활동 정보지도 제작 청소년신문 제작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신문 제작
		캠페인	가출 청소년 공동체 건립·운영을 위한 바자회 근로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도서·놀이감 보내기 캠페인 불우청소년 장학금 모금을 위한 물품기증 바자회 소년소녀가장돕기 캠페인 청소년을 위한 금연캠페인

## 6. 초·중·고 대학 학습과정에서의 자원봉사 삽입방법 -당일현장에서 토론

### 7. 결론

현재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들은 대학마다 자원봉사 행정부서 개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기 설치된 대학들은 자원봉사학점제(한양대, 성균관대 등)를 시행하거나 사회봉사 졸업인 증제(남서울대, 한동대 등)등을 시행하여 전교생이 사회봉사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입시제도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봉사활동 실적을 반영하고 있다.


인성교육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는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급 학교에 자원봉사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개설하고 이를 전담할 수 있는 교사의 배치가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아울러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자원봉사담당교사들에게 사전연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로 일본에서는 교사자격증을 받기 위한 자격요건으로서 7일간의 자원봉사체험을, 정기적인 교원연수에서는 3일간의 자원봉사체험과정이 의무화되어 있다.

현행 중고교 자원봉사 평가방안에 대하여 한 말씀 올리면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활동시간만 채우면 되는 현행의 정량적인 평가방법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본다. 봉사활동을 시행하기이전의 사전준비과정부터 활동 후 평가와 향후계획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질적 양적으로 몇 개의 등급으로 나누어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학생들의 봉사현장을 담당하고 있는 일선 봉사단체 및 공공기관에서의 평가방법에 대한 연구와 교육이 필요하다 하겠다. 본인의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아예 초등학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사회봉사와 관련된 교과목이 필수로 개설되어 이론과 현장실습이 겸해지는 교육이 심도 있게 이루어져 자원봉사가 생활화되어 선진 시민사회를 형성하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참고문헌

- [1] 불런티어 21 (1999), *99 한국인의 자원봉사 의식 및 활동 현황*
- [2] 이성철(2000), *대학생 자원봉사 활동 지원 개선 방안*,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 [3] 이성철(2000),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 자원봉사 방안*, 안전경영과학회 추계발표논문집
- [4] 이성철(2000), *여대생 자원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여성특별위원회 정책연구 2000-9
- [5] 중앙일보사(1995), *자원봉사의 길*
- [6]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1997), *외국대학과 사회봉사*
- [7] 한국사회복지협의회(1997), *자원봉사 프로그램 방안*
- [8] 한국사회복지협의회(1997), *자원봉사 프로그램 백과*
- [9] Campus Compact (1991), *Campus Compact President Statement*
- [10] Connors, R. D.(ed.) (1995), *The Volunteer Management Handbook*, John Wiley & Sons, Inc.
- [11] National Youth Leadership Council(1991). *Growing Hope: a source book on integrating youth service into the school curriculum*, Roseville



부록 1

자원봉사활동진흥법안

# 자원봉사활동진흥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자원봉사 활동의 진흥을 통해 민주시민 역량 배양과 행복한 공동체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본방향을 설정한다.

1. 자원봉사 활동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이며 협동적 참여 능력을 고양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2. 자원봉사 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의 기본 원칙하에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3. 자원봉사활동은 비영리적, 비정파적, 비종교적이 되도록 한다.
4. 모든 국민은 연령, 성별, 장애 등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나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5.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은 민·관 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추진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 및 국가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 활동을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조직을 말한다.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권장·지원한다.

제5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사회개발에 관한 활동
2. 사회복지 및 국민보건증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여성 권익증진 및 청소년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에 관한 봉사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기타 공익사업수행 또는 주민복지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6조 (자원봉사진흥위원회) ① 자원봉사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산하에 관련부처 및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둔다.

② 자원봉사진흥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원봉사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2. 자원봉사진흥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자원봉사진흥위원회는 제2항의 심의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기관간의 협조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진흥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한다)를 둘 수 있다.

④ 자원봉사진흥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조직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학교·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① 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관리하는데 노력한다.

② 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한다.

③ 학교·직장 등의 장은 자원봉사활동의 공헌을 인정해 줄 수 있다.

제8조 (포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자원봉사주간) ① 국가는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에의 참여를 증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자원봉사주년을 설정한다.

② 자원봉사주간 및 그 행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자원봉사자 보호)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 활동에 대한 보험 등 보호의 종류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자원봉사활동의 관리) 자원봉사단체·센터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안전대책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조세감면) 자원봉사단체 및 센터에 출연된 금전 기타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기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13조(국·공유재산 사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단체 및 센터가 국·공유재산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한국자원봉사협의회) ① 전국단위의 자원봉사 활동을 진흥·촉진하기 위하여 한국자원봉사협의회를 설립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법인으로 하되 그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립된다.

④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단체간의 협력 및 사업지원
  2. 자원봉사진흥을 위한 국민 홍보 및 국제교류
  3. 자원봉사 관련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4. 자원봉사 관련 정책 건의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연계 및 지원
  6. 기타 자원봉사활동 진흥과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⑤ 국가는 한국자원봉사협회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자원봉사단체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자원봉사센터 설립·운영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센터는 비영리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자원봉사센터의 사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해 설립된 자원봉사센터는 제외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국자원봉사협회의 설립) 기존에 설립된 한국자원봉사협회는 이 법 제14조 규정에 의해 법 시행후 6개월 이내 재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경과조치)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의해 설립·지원된 기존의 자원봉사센터는 법 제16조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 보되 이 법이 시행된 후 2년 이내에 비영리 법인이 운영하도록 한다.



부록 2

한국자원봉사학회 정관

# 한국자원봉사학회 정관

##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한국자원봉사학회(Korea Society of Volunteerism)라 부른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자원봉사에 관한 학술연구, 발표, 실천운동 등을 통하여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방에는 지회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2조에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조사 및 연구발표
2. 자원봉사 실천 및 정책개발
3. 국내외의 학술교류
4. 교육훈련사업
5. 연구지 발간 등 출판사업
6. 기타 본회 목적에 필요한 사업

## 제 2 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종류) 본회의 회원은 개인(정)회원, 단체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한다.

제6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의 자격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개인회원은 석사 이상 소지자로서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교육·연구기관에서 강의 및 연구에 종사하는 자 또는 자원봉사 기관·단체에서 5년 이상의 활동 경력을 가진 자
2. 단체회원은 자원봉사 발전에 관심을 가진 기관 및 단체
3. 특별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적극적으로 본회의 사업을 후원하거나 본회 발전에 공헌한 자

제7조 (입회) 본회에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 입회서식을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정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2. 회원은 회비납부 의무를 지며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원의 권리가 정지된다.

## 제 3 장 임 원

제9조 (임원의 종류) 본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명
2. 부회장 3명 이내
3. 이 사 20명 내외(회장, 부회장 포함)
4. 감 사 2명

제10조 (임원선출)

1.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동의를 받는다.

제11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임원직능) 임원의 직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며 부여된 임무를 수행한다.

4. 감사는 본회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감사하며 그 결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 4 장 회 의

제13조 (총회)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2. 총회는 회장과 재적 이사 1/3이상의 요구나 감사들이 서로 요구할 때 개최한다.

3. 총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는 늦어도 총회개최 7일 전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총회의결)

1.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회장 및 감사선출

② 사업보고와 결산 승인

③ 사업계획과 예산 승인

④ 정관의 제정 및 개정

⑤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총회의 의결사항은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15조 (이사회)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된다.

제16조 (이사회 의결) 이사회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보고와 결산 심의

2. 사업계획과 예산 승인

3. 회칙제정과 개정의 심의

4. 제 규정의 제정과 심의

5. 운영위원회의 설치

6. 회원의 입회승인, 포상 및 징계

7. 총회소집

제17조 (운영위원회 등) 본회는 학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필요한 경우 연구위원회, 정책위원회, 편집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제18조 (의결) 본 정관에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회의의 안건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19조 (정관개정 등) 정관개정과 회원징계에 관한 사항은 해당 회의의 재적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자는 회의 성립에만 그 효력을 발생한다.

## 제 5 장 재 정

제20조 (재정)

1. 본회의 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충당한다.

① 회비

② 보조금

③ 기부금 및 찬조금

④ 사업수입금

⑤ 기타

2. 회비의 액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부 칙

제1조 (발효) 본 정관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회원가입 안내

「한국자원봉사포럼」의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아래의 혜택을 드립니다.

- 정기포럼, 세미나 자료집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포럼의 연구 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매 회 포럼행사에 초청장을 받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 : 275-20-085456 / 제일은행 예금주 : 이제훈 [한국자원봉사포럼]  
 가입비 : 30,000



**한국자원봉사포럼**  
 KOREAN VOLUNTEERS' FORUM

(100-151) 서울특별시 중구 총정로1가 58-1 청양빌딩 9층  
 TEL : 02)737-1082 FAX : 02)737-1083  
 http:www.volunteerforum.org E-mail: kovof@hanmail.net

..... 절 ..... 취 ..... 선 .....

## 포럼 (회원) 입회 신청서

성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한문					
	영문					
소속				직위		
연락처	직장	주소	우편번호 : -			
		전화		팩스		
처	자택	주소	우편번호 : -			
		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p>본인은 한국자원봉사포럼 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p> <p>2004. . . . .</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p>						

## 학 회 (회원) 입 회 신 청 서

성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한문					
	영문					
소속				직위		
연 락 처	직장	주소	절 취 선 우편번호 : -			
		전화			팩스	
	주택	주소	우편번호 : -			
		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p>본인은 귀 학회의 회원으로 가입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0 . . . . .</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p>						



---

제41회 정기포럼 자료집  
자원봉사진흥법 제정과 향후과제

---

발행일 : 2004. 10.

발행처

**한국자원봉사포럼**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1가 58-1 청양빌딩 9층

Tel : 02-737-1082, Fax : 02-737-1083

e-mail: kovofo@hanmail.net

---